

# 제 2 부

##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

-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 제5장 기사수정/열람·검색 차단 사례
- 제6장 기타 사례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 제 1 장

## 정정보도 게재 사례



#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 사례 1

### 2018대구조정3·4·5 정정·반론·손배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지조치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보도하면서 유감표명을 포함하여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역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지방선거를 수 개월 앞두고 해당 지역 시장에 대한 '출마 예상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1면에 상세히 발표하고, 동일면에 별도 칼럼을 통해 후보자이자 전 시장인 신청인이 '지역시민들을 갈라놓고 파당을 지웠다', '구태와 구습에 빠졌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하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여론조사는 보도 이전 이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보도 및 인용금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1면에 인용보도하였고, 근거 없는 비방을 통해 명예가 훼손되고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실확인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선거여론조사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년 ○월 ○일에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치를 받았으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지역선택 및 연령선택문항을 제외하고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실제 여론조사 내용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함

####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신청인의 재임시절 ○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으며,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시정을 폈다고 밝혀왔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조치 이유와 내용을 담아 정정 및 유감을 표명하고, 칼럼 내용에 대해 신청인의 입장을 추가로 반영하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1

○시장 선거는 현 시장과 전 시장의 맞대결, 그것도 리턴매치 구도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A시장과 B 전 시장은 두 번에 걸쳐 시장을 역임했고, 3선 도전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중략]

#### ■ 현직시장 VS 전직시장

차기 ○시장 적합도 조사에서는 A시장이 한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C신문과 D방송사가 여론 조사회사인 E사에 의뢰, 지난달 22, 23일 ○시에 사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누가 ○시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A시장이 ○%의 지지율로 ○%에 머문 B전 시장을 제쳤다.

A 시장은 도의원 1,2선거구에서 모두 우세했다. 1선거구에서 46.8%, 2선거구에서 52.3%를 A시장은 도의원 1,2선거구에서 모두 우세했다. 1선거구에서 ○%, 2선거구에서 ○%를 기록했다. 반면 B 전 시장은 1,2선거구에서 각각 ○%, ○% 지지율을 거뒀다. [중략]

#### ■ 용호상박 선거전

A시장은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업고 탄탄한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전문가답게 반칙 없고 기본에 충실한 리더십이 트레이드 마크다. 검증된 청렴성도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후략]

### 조정대상보도2

[전략] 한마디로 B 전 시장은 다시는 시장에 출마하면 안 된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다. 6년 했으면 됐지, 또 그 자리를 넘보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중략]

그런데도 B 전 시장 측은 뿌꾸기마냥 C당 지역위원회의 주요 당직에 자기들 사람으로 채워놓고, 남의 집에 살림을 차리고 있다. 전에도 이런 일을 하더니, 꼭 그때와 닮은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것이, 그 당의 힘을 빌려 시장에 출마하겠다는,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B 전 시장은 재임시절 정말, 어느 시장 때보다 시민을 갈라놓고, 파당을 지웠다. 같은 당이면서도 국회의원과 같등했고, 급기야는 국회의원에 출마해, ‘아~ 저 사람, 국회의원 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에게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권력욕만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 [중략]

구태와 구습에 빠져 일부 B 전 시장으로부터 물심으로 득을 보았던 사람들이 설치고 득실대는 세상을 씻어 내야 한다. 그들이 이번에 발호하면 차차기 ○시는 또 다시 그들의 리그로 떨어진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월 ○일자 ○면에 [ ] 제하의 기사에서 “C신문과 D방송사가 여론조사회사인 E사에 의뢰, ○시장 적합도에 대한 조사결과, A 시장이 ○%의 지지율로 ○%에 머문 B 전 시장을 제쳤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는 이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지역선택 문항(‘○○지역 외’)과 연령선택문항(‘만19세 미만’)을 제외하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시지역 외의 거주자와 19세 미만의 자가 응답하여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한 것에 대해 B 전 시장 측에 유감을 표합니다.

한편, 본 신문은 동일자 ○면에 [ ]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B 전 시장이 재임시절 어느 시장 때보다 시민을 갈라놓고 파당을 지웠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 전 시장은 “재임시절 농민, 기업인, 근로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고 모든 시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시정을 폈으며, 그 결과 어느 시장 때보다 시의 인구가 증가하고(3년 연속 인구 증가),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하는 등 살기 좋은 ○을 만들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면 우측상단에 ○년 ○월 ○일까지 게재하여 발행한다. 단, 위 보도문 제목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 및 크기와 같게 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발행해온 통상적인 발간부수인 ○만부를 발행하고 피신청인이 배포해온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포한다.



## 사례 2

## 2018대구조정10·11, 12·13(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경찰서가 한 식당의 사업주에 대해 표적수사하면서 해당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A씨를 장애인 등록 및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준다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신청인이 관할 면사무소에 A씨의 병원비 등 후속조치를 해달라고 해 그 배경에 의혹이 있으며, A씨가 독방에 감금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A씨의 장애가 의심되어 친형을 찾아주었고, 친형의 동의 및 입회 하에 병원에 치료 및 입원 의뢰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니며, 면사무소에 후속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A씨의 퇴원 후 생활지원에 대한 상담이었다는 취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A씨의 장애가 의심되어 친형을 찾아주었고, 친형의 동의 하에 병원에 치료 및 입원 의뢰하였을 뿐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 ‘일반인을 정신병자로 만들었다’고 보도했으나 A씨는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면사무소에 병원비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퇴원 후 사후조치에 대한 상담을 한 것이었다
- 이 사안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표적수사’나 ‘갑질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왔다

## 조정결과

- 중재부에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해보더라도 A씨가 독방에 감금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정정하고, A씨를 입원시키는 데 전문의의 진단과 가족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입원’시켰다고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 나머지 내용에 대해 반론보도를 권유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경찰의 인권침해가 도를 넘었다. B경찰서에 근무하는 모 파출소장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내사와 표적수사를 했다는 경찰의 갑질 논란도 일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일하는 사업주가 노동력과 장애인의 정부보조금을 착취한 것으로 의심해 내사를 했다. 하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자, A씨를 장애인등록과 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달 24일 모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병원 측과 한통속이 돼 A씨를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같은 사실은 가족의 폭로로 드러났다.

가족들은 경찰이 “좋은 혜택 받게 해준다는 말만 믿었지 정신병원인 줄 몰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입원한 C씨는 의사소통이나 일반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일반인을 정신병자로 만들면서 인권 침해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때문에 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정신병자로 취급,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C씨는 독방에 감금, 수면주사를 맞았는지 7일간 잠만 잔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한편, 관할 면사무소는 경찰이 L씨를 입원시킨 후 면사무소를 방문, 병원비 등 후속조치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털어놔 정신병원 강제입원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문

본보는 지난 ○월 ○일자 사회면 [     ] 제하의 기사에서 B경찰이 한 식당사업주의 종업원 C모씨에 대한 노동력 및 정부보조금 착취의혹에 대하여 내사하다 혐의가 없자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C씨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등 표적수사 및 ‘갑질’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경찰서는 “지난 1월 중순 ○면 소재 한 식당에서 장애인을 고용,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내사를 진행하던 중, 식당에서 일하던 C씨가 자신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등 장애가 의심되어 ○시에 거주하는 친형을 찾아주었고, 해당 정신 병원 전문의의 진료 후 C씨 친형의 동의 아래 입원결정된 것이므로, 경찰이 일반인을 강제로 정신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지는 경찰이 관할 면사무소를 방문, C씨의 병원비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C씨의 퇴원 후 기초생활 및 장애인지원비 등 사후조치에 대해 면사무소 담당자와 상담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지는 C씨가 이 병원에 입원한 후 독방에 감금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B경찰서는 본보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장애인 임금착취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표적수사’나 ‘갑질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면에 ○년 ○월 ○일까지 게재한다. 단, 위 보도문 제목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 및 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홈페이지 ○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3번째 이내)에 ○년 ○월 ○일 ○시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과 본문이 나타나게 한다. 24시간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게 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하단에도 위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사례 3****2018서울조정623 정정청구**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의 대처를 비판한 방송보도에 대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편성채널방송사인 피신청인은 모 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직 의사인 신청인이 내내 자리를 비웠다가 사망사건이 일어나기 4시간 전에서야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일 내내 병원 내에 머무르면서 응급실과 당직대기실을 오갔고, 병원 시스템상 신청인은 신생아응급실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구역 내에 상주하며 콜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면서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건 당일 오전 출근하여 회진하였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환자들을 계속 진료하였으며,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

**조정결과**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면을 통해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인터넷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중 '하루종일 자리를 비웠다'는 표현을 '두 차례 회진했다'는 취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지난달 A병원 신생아 ○명이 숨진 당일 중환자실을 책임진 당직 의사는 낮시간 내내 자리를 비웠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루종일 나타나지 않았다가 아이들이 숨지기 4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망 당일 한 신생아의 간호 기록입니다. 새벽부터 이상 현상이 시작됩니다. [중략]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당직 의사는 중환자실에 없었습니다. 당직 의사 B씨는 오후 5시에 처음



나타납니다. 저녁 6시에 처음 기관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합니다. 이상이 발생한 지 13시간 만에 처음 본격적인 조치가 시작된 겁니다. 7시 23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9시 32분 끝내 아이는 숨집니다.

경찰은 내일 당직 의사 B씨를 현장 의료진 가운데 마지막으로 불러들입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이들 상황에 대해 연락을 받았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방송은 지난 ○월 ○일 ○프로그램 [ ] 제하의 보도에서 “A병원 NICU 담당 의사인 B씨가 사건 당일 응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까지 자리를 비우고 ‘전화 처방’만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직 의사 B씨는 사건 당일 출근하여 오전과 오후 사망한 환자들을 회진하고 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가 하루종일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면 첫 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각 조정대상보도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사례 4****2018제주중재1·2 정정·손배청구**

추측성 보도에 대해 당사자간 화해를 바탕으로 정정 및 유감표명보도를 게재 하도록 중재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성애자임이 '강제 아우팅'되었다는 취지로 온라인 연례면에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강제 아우팅이 억울하다"는 등 마치 직접 동성애 취향을 고백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본인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곡 보도하여 성적 취향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은 해당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거나 동성연애자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법정에서도 동성연애자 라고 표기한 적이 없으므로 바로잡는다

**중재결과**

- 피신청인은 추측성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조정대상 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한 후 정정 및 유감보도 의사를 밝혔다. 신청인 또한 정정 및 유감 보도가 게재되면 금액배상은 양보할 의사를 밝혀함에 따라 중재 전환을 권유,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여 중재절차로 전환되었다.
- 중재부에서는 양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화해서를 토대로, 정정 및 유감보도를 명하는 중재결정을 내렸다.

※ 중재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중재결정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월 ○일자 ○면에서 A씨가 강제 아웃팅당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씨는 한번도 본인을 동성연애자로 밝힌 적이 없고, 관련 인터뷰를 한 바도 없으며, 해당 사건 관련 소송절차에서도 동성애와 관련한 언급이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A씨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년 ○월 ○일까지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면 기사목록 상단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 활자는 각 중재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여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게재 완료 이후에는 홈페이지에서 검색 시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네이버)에게 전송하여 검색 시 노출, 검색되도록 요청한다.



## 사례 5

### 2018제주조정15·16, 17·18(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지역내 공기업이 경영실적을 부풀렸다는 보도에 대해 일간신문의 1면과 2면에 정정보도를 이어서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제주관광공사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늘려 적자규모를 줄이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경영실적을 부풀렸다는 취지로 지면 및 온라인을 통해 비판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신청인은 관련법 및 관계부처 각종 기준,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도되어 공기업으로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지방공기업 회계처리의 원칙에 따라 재산의 증감 및 변동(회계거래)을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린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게재지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재부는 1면에 제목과 내용의 일부만 게재하고 '2면 계속'이라고 표기한 후 2면에 나머지 내용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권유하였고,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1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판매·관리비용 일부를 누락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늘려 적자규모를 전년보다 20여억원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업의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분식회계 방식으로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하지만 제주관광공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판매·관리비에 포함돼야 할 항목인 보조금 인건비 20억원이 경상전출금수익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도보조금 인건비를 영업외 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중략]

제주관광공사가 이처럼 장부상으로 실제 경영실적보다 이익을 부풀려 계산한 것은 지난해 한반도 사드배치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줄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받은 인건비 20억원을 판매와 관리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경상전출금수익으로 잡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일반 기업하고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지역 한 경제전문가는 “시내면세점 이전에 따라 발생한 면세점 구축물처분 이익금 7억3900만 원도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나 영업외수익에 포함시켜 당기순이익을 크게 늘렸다. 기업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분식회계를 한 흔적이 곳곳에 있다”며 “감사를 통해 이같은 의혹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조정대상보도2

공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다르다. 물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기업도 하나의 기업인만큼 이윤을 도외시킬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공기업이 경영성과를 빙퇴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제주도가 출자해서 설립한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략]

하지만 제주관광공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와는 전혀 달랐다. 특히 판매·관리비에 포함돼야 할 항목인 보조금 가운데 직원 인건비로 20억원을 집행한 후 경상전출금수익으로 회계를 처리했다. [중략] 제주관광공사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 및 결산지침에 따라 경상전출금수익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하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필수경비인 직원 인건비를 보조금인 경상전출금으로 끌어다 총당한다는게 말이 되나. [중략]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경영실적을 부풀린 것이다. 일반기업처럼 경영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한 흔적이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분식회계는 법으로도 금지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관광이 어려웠다는 걸 모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내는건 아니다. 이래서야 도민들이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어떻게 믿겠는가. 감사기관을 통해 의혹들이 속 시원히 풀렸으면 한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월 ○일자 [ ] 제하의 기사에서 제주관광공사가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분식회계 방식으로 적자규모를 줄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2면 계속)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판매·관리비용 일부 누락으로 순이익을 20억 원 늘렸다는 내용은 제주도의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또한 시내면세점 이전에 따라 발생한 면세점 구축물처분 이익금 7억 29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영업외수익으로 포함시켰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회계상 발생주의 관점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제주도로부터 2017년 급여 20억 원을 지원받아 영업손실이 감소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및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경상전출금 수익(영업외수익)/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의 기간 내에(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다음 항목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1면 우측 하단에 제목과 내용 일부(“○○일보는...〈중략〉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2면 계속)”를, 2면 좌측 하단에 나머지 내용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중략〉...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서브탑 목록에 통상의 기사목록 제목 크기의 고딕체로 위 보도문 제목을 컬러처리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보도문을 기사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검색 시 계속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보도가 검색되는 한, 원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보도문을 전송한다.



## 사례 6

## 2018경기조정71 손배청구

제보에 근거해 보도했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따라 정정·반론·사과보도 및 기사열람·검색 차단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역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지자체 교육청으로부터 가정형Wee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신청인 청소년재단이 직원과 학생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지원자들의 평가 순위를 변경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으로 4회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기사를 게재 하였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일방적인 제보에 의한 기사로서 종교행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단순히 종교 서적 비치로 인한 경고 처분이 있었을 뿐이며, 채용비리 또한 평가 순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면접 이후 서면평가 점수를 반영한 것 뿐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은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청의 무혐의통지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정정하고, 종교행위와 관련해서는 반론을, 동시에 신청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사과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본보는 ○년 ○월 ○일자 [ ] 제목의 각 기사에서 교육청 위탁 시설인 A(Wee)센터를 운영하는 B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 센터에 머물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위해 재단 이사장이 면접 순위 ○위와 ○위의 순위를 바꿔 채용하라고 지시하고 관련 문서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으며,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재단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청이 ○년 ○월 ○자 무혐의 처분



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위 재단에서는 센터에 보호 중인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지는 위 보도로 인해 해당 재단과 소속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년 ○월 ○일자 ○면에 보도문을 2단에 걸쳐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2단 크기로, 본문활자는 통상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사회면에 ○년 ○월 ○일 ○시까지(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면 뉴스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나타내도록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크기와 같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 보도문이 나오도록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사회면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정대상보도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영구히 노출·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도 이 사건 기사가 더 이상 노출·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사례 7

## 2018대전조정56 정정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 결과에 관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역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이전에 A지역합창단 노동조합이 신청한 조정사건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반론보도 요청 불성립’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A지역합창단 노동조합 노조의 반론보도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취하를 권유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 노동조합은 이전의 조정사건은 조정을 취하하는 대신 향후 신청인이 피신청인 측에 의견, 주장 등에 대한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경우 기사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 불성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마치 조정신청이 기각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언론중재위원회 확인결과 조정을 취하하고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 것이지만 ‘요청 불성립’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요청한 반론보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반론보도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항의 이후 인터넷 기사를 즉시 내리고 제목을 정정하는 ‘바로잡습니다’ 기사도 게재했다고 항변하였으나 중재부에서는 피신청인이 조정합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신문은 지난 ○월 ○일 ○면 [ ] 제하의 기사에서 A시립합창단이 본 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 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이 조정불성립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정사건에서 A시립합창단이 조정을 취하하는 대신 본 신문은 A시립합창단의 활동이나 의견, 주장 등의 기사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체의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활자체 및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와 동일한 활자체 및 크기로 게재한다.



## 사례 8

## 2018전북조정71·72 정정·손배청구

보조금 횡령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는 보도에 대해 무혐의처분 사실을 근거로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역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지역군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환대상자 중 보조금 유용 및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자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신청인은 보도에 언급된 비정규직 직원으로, 해당 횡령 고발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탈락되고 재취업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의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사건 관련, 경찰 및 검찰에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최초 보도 이후 ‘보조금 유용 및 횡령’을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의혹’이라고 수정했다고 항변하였으나 중재부는 단정적인 표현을 ‘의혹’이라고 수정했다 하더라도 혐의 사실이 신빙성이 있지 않는 한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중재부는 신청인의 정규직 전환 탈락이 피신청인의 보도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양 측에 정정보도 게재로 합의를 권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A군이 군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논란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보조금 유용과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자를 채용한데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부적격자를 감싸고 도는 공직자들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규직 채용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B씨는 지난 27일 오전 A군청을 방문해 부서 과장과 부군수, 군수실을 기습 방문해 “부적격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한다면 기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력 항의했다. [중략]

이번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기존 직원 고용승계를 우선하라는 내용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 방식(서류와 면접)인 아닌 비공개 채용방식으로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A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지난 ○월 ○일자 ○면 [ ] 제목의 기사에서 “A군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보조금 유용과 횡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자를 채용”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보조금 유용과 횡령 혐의를 받은 해당 직원은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면에 정정보도문을 5개월 이상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면의 첫 페이지 상단에 나타내도록 한다. 단,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보도가 계속 검색 또는 노출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단,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본문활자보다 3배 이상의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를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전재하여 조정대상보도가 계속 검색 또는 노출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조치한다. 단,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본문활자보다 3배 이상의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사례 9

## 2018서울조정1733 정정청구

부실 공사 의혹 보도에 대해 법원의 재판 내용을 근거로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

##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화력발전소 배관건설 공사와 관련, 공사 당시 용접사로 근무한 A씨가 해당 공사가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LNG 가스배관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등 부실 의혹을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배관건설공사 시공사인 신청인 업체는 가스공사의 표준 시방을 준수하였고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마치 신청인 업체가 부실시공을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기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가스공사의 공사표준시방을 준수하였으며, 관계기관에 확인의뢰한 결과 설령 표준시방에 위반되게 작업하였더라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제보자가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중재부는 관련 재판 내용에서 언급된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A화력발전소 공급배관 건설공사' LNG가스배관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A화력발전소 공급배관 건설공사'의 안전성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한국가스공사가 시행사이며 시공사는 B건설이 주계약자이며 부계약자는 C업체다.



LNG가스배관 안전에 문제성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D씨는 공사당시 부계약자 C업체의 직원으로 안전 문제성을 제기한 구간에 용접사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민원인 D씨에 따르면 “LNG 배관 파이프 용접의 베벨각도가 시방서에는 30도~35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은 20도로 용접을 했다”며 “이는 용접 부위가 줄어들어 안전에 문제성이 있지만 30도로 용접을 하면 작업시간이 2시간이 소요 되는 반면 20도로 작업을 하면 40분이 소요 된다”고 전했다. [중략]

이에 C업체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과 경찰, 시의원, 포천시청과 함께 확인굴착을 해서 전문가들이 문제성이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것은 C업체에서는 그 누구도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문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원인 D씨는 “본인이 확인 굴착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확인 굴착에 참여한 적도 없고 확인 굴착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없다”고 말했다. [중략]

시청 조사팀 관계자는 “시청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여건상 어려워 한국가스공사에 의뢰한바 안전검사에 대한 기록이나 검사서 없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 확인굴착에 참여한 적도 없고 한국가스공사에서 보내준 회신으로 민원인에게 답변을 했다”고 해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후략]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월 ○일자 ○면 [ ] 제하의 기사에서 시공업체가 LNG 배관공사를 하면서 한국가스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르지 않고 부실 시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가스배관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D씨의 민원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공업체는 한국가스공사의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에서 용접절차서 부적합 시공 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설령 시공업체에서 표준시방에 위반되게 작업하였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사례 10

## 2018광주조정87,90(병합) 각 정정청구

폐간된 지역 신문의 정통성 계승에 대한 언론사 간 조정사건에서 정정 및 유감 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창간기념 특집면에서 회장의 기념사 및 사진 등을 통해 'A신문의 시대정신을 계승'하였으며, 강제 폐간 등 역경을 뚫고 재창간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신청인은 타 언론사인 B신문사의 소속기자로서, A신문이 지방신문 통폐합 조치에 따라 B신문사로 통합되었으므로 A신문을 계승한 것은 신청인이 소속된 A신문사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A신문의 시대정신 계승, 강제 언론 통폐합 등 역경, 재창간 사실 등은 피신청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A신문을 계승한 것은 B신문사이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A신문을 계승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본연의 언론 시대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B신문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정정 및 유감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창간 29주년 기념사 “진실의 편에 서서 언론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와 한가족이 되면서 새출발을 선언한 A신문이 스물 아홉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도민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A신문은 [중략] ○년 창간된 옛 'B신문'의 시대정신을 계승하였기에, 군사정권의 강제 언론 통폐합으로 한동안 부침도 있었으나, 무려 60년 가까이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왔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1989년 지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부응하여 '진실의 편에 서고, 향토를 사랑하며, 문화를 꽃피운다'는 사시(社是)를 구현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세월이 스물 아홉 개의 성상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삼권분립과 비교되어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며, 저희 A신문이 걸어온 29년은 언론의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고자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이를 뒤 임기가 시작되는 제7기 지방정부의 출범 등을 감안하면 지금 이순간도 쉽없이 뛰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저희 A신문 임직원 모두는 유념하고 있습니다.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지난 ○월 ○일자 '창간 29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B신문이 '구 A신문을 계승'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 A신문의 불굴의, 본연의 언론 시대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덧붙여 '계엄군 검열 사진'은 구 A신문 출신이자 과거 사장으로 재임하셨던 고 ○○○ 사장께서 생전 사장 재임시 '언론탄압의 대표적 상징 중 하나'라며 직원들에게 '이런 기자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공개한 후 5·18재단에 기증한 것으로, 구 A신문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을 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A신문은 B신문 측이 구 A신문과 C신문의 통합에 따른 정통성 주장을 이해하며, B신문의 역사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 지면 ○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지면 판 조정대상 보도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이 한다.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번째 기사로 나타내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인터넷 판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인터넷 판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또한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위 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홈페이지 ○면과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 11

## 2018서울조정1882·1883, 1884·1885(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노동조합을 비판한 사설보도에 대해 정정 및 유감보도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중앙일간신문인 피신청인은 대법관 출신인 시법원의 전담판사가 첫 출근길에 노동조합 소속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는 등 봉변을 당했다며, 이를 ‘反법치 행패’ ‘그런 행패를 방관해선 안된다’는 등의 취지로 비판한 사설을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보도에 언급된 신청인 노동조합은 당시 해당 판사가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원들이 판사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보도에 언급된 판사는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고, 신청인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만나지도 못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이 신청취지대로 정정 및 유감보도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한국 사법부 70년 역사에서 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시·군 법원의 ‘시골판사’를 자임한 A 지방법원 B지원 C시법원 소액사건 전담판사가 첫 출근길에 어이없게도 봉변했다. D노조, E노조 호남지방본부, F당 ○도당 등에 소속된 30여 명이 법원 정문에서 시위를 벌여 그의 출근을 훼방 놓았다. 대형 로펌 취업이나 개업을 마다하고 “대법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G판사의 선의(善意)마저 무참하게 짓밟은 반(反)법치 행패다.

시위대를 뚫고 G판사가 간신히 출근하는 과정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G판사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취임식도 취소가 불가피했다. G판사 면담을 거듭 요구한 시위대는 법원 민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G판사가 신변 위협을



우려해 오후 일정은 취소하고 조기 귀가했겠는가.

이들의 주장 또한 가당찮다. [중략] 경찰·검찰은 그런 행패를 방관해선 안 된다. 불법 행위 엄단으로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공권력의 책무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신문은 지난 ○월 ○일 자 ○면 [ ] 제하의 사설에서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G판사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고, 취임식도 취소가 불가피했다. 판사 면담을 거듭 요구한 시위대는 법원 민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위대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고, G판사와 H 해고노동자들이 아예 만나지도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허위사실을 근거로 논평한 것에 대해 해고 노동자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면 우측 하단에 기재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년 ○월 ○일자 ○면 [ ] 제하의 기사의 부제목의 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크기 및 활자체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면 초기화면에 통상의 방식으로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면 초기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사례 12

## 2018경기조정184, 185(병합) 각 정정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인 피신청인은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보도에 언급된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파악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지체처의 지원금신청을 보조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소유자를 파악하고, 동의서를 받아 지자체에 신청서를 접수, 지원금을 지원받아 공사금액을 충당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공사 중 일부 사항이 위배되었다고 해서 ‘조작해서 꿀꺽’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나치고, 신청인이 제출한 지자체의 관련 공문을 확인해본 결과 신청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정보도를 권유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A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A시로부터 공사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월 B구 소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회) 측에 ‘공용배관 개량 사업 지원금’ 승인 대상이 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C 아파트 입주자회는 아파트 내 노후 배수·관에서 녹물이 나온다고 A시에 공용배관 공사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시가 이에 대한 ‘승낙’ 표시를 해준



셈이다.

시 승인을 받은 C 아파트 입주자회는 1일부터 6일까지 주민들에게 공사 동의서를 얻기 시작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및 공동주택이 배수·관 공사를 할 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해선 아파트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C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동의서에 찬성해 시 지원금의 기준이던 ‘80%’를 채웠다. 이어 같은 달 21일 C 아파트 입주자회는 해당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노후 배수·관 공사인 ‘급수·급탕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 공사가 끝난 지난 7월께 A시로부터 7억 9천만여 원의 지원금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실제 C 아파트 입주자회가 동의서를 받은 대상이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들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입주민 등 대리인이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위임장이 함께 첨부돼야 하지만 C 아파트 입주자회는 당초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를 얻지 않고 입주민에게만 동의서를 작성하게 해 위법을 저질렀다. 이때 수원시 역시 정확한 확인 없이 약 8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C 아파트 입주자회에 지원했다.

A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미처 몰랐던 부분으로, 즉시 C 아파트 입주자회에 대한 조사가 나서겠다”며 “이번 공용배관 개량 공사는 입주자회 대표가 총괄 관리감독해 온 만큼 공사와 관련된 민·형사상 모든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 아파트 입주자회 관계자는 “시로부터 공사 지원금을 타기 위해 입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보는 ○년 ○월 ○일자 [ ] 제목의 기사에서 A시 B구 소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 배수·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로부터 공사지원금을 타기 위해 소유자가 아닌



입주민 위주로 단 6일에 걸쳐 동의서를 받았고, 계획보다 공사 금액이 10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시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약 30년 된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1천992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파악하여 약 4개월 15일에 걸쳐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의 동의서를 받았기에 관련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배관 교체 공사의 범위 및 금액은 변경되거나 증액되지 않고 최초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까지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면에 보도문을 2단에 걸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홈페이지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사회면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각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3**

**2018경기조정221·222·223, 224·225·226(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사업 설명회에서 있었던 참석자들의 비판적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외에 기사수정이 이루어진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인 피신청인은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설명회에서 시민들과 시의원이 현실성이 낮은 황당한 사업이라는 등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인용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해당 태양광 사업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며, 당시 사업설명회에서 시민들과 시의원이 보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발언했다고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도 왜곡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사업인 것처럼 표기하였고, 사업수익성을 확보하도록 사전 설계되는 등 효율성에 문제가 없고, 시민과 시의원의 발언을 직접인용하였으나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당시 설명회가 종료한 이후에 시민들과 시의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정 결과 사업주체 및 인원, 관련 펀드의 판매대상 등에 대해서는 정정, 수익률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시민과 시의원의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서울시가 과천시 막계동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려 하자, 과천 시민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사업추진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2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9만여㎡ 규모의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과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과천시민회관 세미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과천시의회 시의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시민들은 태양광사업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며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가 태양광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사업개요와 피해대책 등 관련자료 한 장도 배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그맨을 사회자로 내세우는 등 과천시민을 우롱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시민 K씨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은 과천시민에 편드를 들게 해서 과천시민 돈으로 전기를 생산, 과천시민에게 팔겠다는 사업”이라며 “하지만 태양광 수익률은 5.6%로 시민펀드 수익구조와 수익률이 낮아 현실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태양광 사업을 반대했다.

L씨는 “과천시 중 개발제한구역은 중앙정부에서 빼앗아 제멋대로 개발하고, 서울대공원 주차장은 서울시가 탈 원전 정책 일환으로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해 과천시 도시미관 등을 해치고 있다”며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설치사업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금란 시의원은 “서울시는 사업설명회에서 태양광 패널에 납성분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빛 반사 피해도 크지 않다는 등 황당한 설명으로 일관했다”며 “사업성이 좋고,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과천시가 아닌 서울지역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라”고 서울시 행정을 비난했다.

이어 “서울시는 폐 패널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지 연구 중이라는 답변을 했고,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의 이익에 대해서는 펀드로 나누겠다는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서울대공원은 과천시 땅이며, 언젠가는 과천시로 이전돼야 하기 때문에 20년 기간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보는 ○년 ○월 ○일자 ○면 [ ]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했고, 설명회에 과천시의회 시의원과 시민 등 200



여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사업에 관한 시민과 시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과천시민에 펀드를 들게 해서 과천시민 돈으로 전기를 생산, 과천시민에게 파는 사업’이고 ‘태양광 수익율이 낮아 현실성이 낮은 사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에너지공사가 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서 사업설명회도 서울에너지공사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설명회 참석인원은 1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민 공모펀드’는 관련법상 과천시민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생산된 전기는 규정된 공급의무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울에너지공사는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태양광 펀드의 전체수익률은 12.4%로 산출됐고, 시민 수익률은 연 4.1%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면에 2단에 걸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년 ○월 ○자 ○면 [ ] 제목의 기사의 제목활자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제목과 동일한 서체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홈페이지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보도문을 인터넷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홈페이지에서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중 시민 K씨의 발언 단락(“시민 K씨는~반대했다”)을 전체 삭제하고, 시의원의 발언 중 “황당한”, “비현실적” 단어를 삭제하며, 수정된 조정대상 보도의 본문 하단에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사례 14

## 2018서울조정2361·2362 정정·반론청구

저작권 관련 분쟁을 다룬 보도에 대해 법원의 관련 판결 요지를 담은 정정보도 게재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업체가 타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국가 기록원을 통해 넘겨받아 복제했다고 2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신청인 업체는 관련 소스코드는 국가기록원이 건네준 것으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타사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이 없으며, 타사와 신청인 업체의 소프트웨어 유사도는 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국가기록원이 피고보조참가를 한 것은 A사가 'B사가 승소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렸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으나 그같은 언질을 받은 적이 없고 절차상 보조참가한 것임
- 해당 소스코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
- 반론 : B사는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이 없고, 국가기록원이 특정 업체를 도운 적이 없으며, 이미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인증을 마친 상태였고, A사와 B사의 소프트웨어 유사성이 미미함

## 조정결과

- 신청인 업체는 해당 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판결문을 제출했고,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해당 판결문의 요지를 보도하도록 양 측에 권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1

국가기록원이 민간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설계도)를 경쟁업체에 통째로 넘긴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증보안전문업체 A사는 지난 2015년 12월 저작권위반혐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이던 B사와의 재판과정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진술을 듣게 됐다.

기록정보화사업을 추진 중인 국가기록원의 요청으로 납품한 대용량 기록물전송 솔루션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B사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중략]

A사는 이 제품을 2011년 공급하고 난 뒤 3년이 지나서야 B사 제품이 자신들의 제품을 복제한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D사가 국가기록원에 공급한 제품과 A사의 제품은 90%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D사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제품의 저작권은 국가기록원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주체는 D사가 아닌 국가기록원이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다.

국가기록원은 소송이 제기된 뒤 1년 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D사가 승소할 경우 자신들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A사가 언질을 넣었기 때문이었다. [후략]

## 조정대상보도2

지난 2007년 A사는 기록물전송 솔루션을 국가기록원에 납품한 뒤 2010년 국가기록원의 표준기술 규격 제정 사업을 수주해 범용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를 납품했다.

이 때부터 국가기록원은 A사에 유관솔루션업체인 A사를 지원해주라고 주문했다.

향후 중앙행정부처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자기록물의 생성과 처리 규모가 커지는 만큼 해당분야 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가기록원 기록정보기반과장은 “한 개 업체가 아니고 가능하면 한 개 이상의 복수업체가 기술 규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그렇게 해 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사는 개발제품의 설치 매뉴얼과 일부 레이어별 샘플코드를 B사에게 전달하는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시작했다.

이 와중에 국가기록원 직원은 2011년 2월 B사에 A사의 제품 소스코드를 메일로 전달했다.

그로부터 2년 뒤 2013년 B사가 개발한 제품은 B사 제품에 이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의 인증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듬해 두 업체의 제품간 연동테스트 진행 중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A사는 B사가 자신들의 제품을 복제했다는 인지를 하게 됐다.

A사는 자신들이 국가기록원에 납품한 제품이 복제된 사실을, 그것도 국가기록원이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2015년 12월 재판에서 B사 업체 직원의 입을 통해 알게 됐다.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지는 ○년 ○월 ○일자 [ ] 제하의 각 기사에서 B사가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소스코드를 국가 기록원을 통해 취득 및 복제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범용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국가(국가기록원)에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 축탁 결과에 의하면 B사의 제품과 피고의 제품의 유사도는 표준기술 규격 부분을 포함하여도 원본 기준 16.88%, 비교본 기준 7.92%에 불과하여, B사의 프로그램이 A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까지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 기사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사례 15

2018서울조정2408·2409, 2410·2411(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  
 기로 합의한 언론사간 조정사례

### 보도내용

- 종합일간지인 피신청인은 종합편성채널인 신청인 언론사가 2014년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취지로 지면 및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신청인 언론사는 당시 기준점수를 상회하여 적법하게 승인받았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은 해당 심사에서 기준점수를 상회하여 적법한 승인을 받았기에 이를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이전 온라인 기사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별도의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고 온라인상 기사만 수정되어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보도게재 지면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2차에 걸친 심리 끝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12월 1일 <티브이조선><채널에이><제이티비시><엠비엔> 등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출범한 지 7년을 맞는다. 방송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종편이 방송시장에서 안착한 만큼 신규 방송사업자에게 주었던 의무송출제도 등 특혜환수에 나섰다. 지상파 방송과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공정경쟁 구도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편에 부과된 특혜는 의무송출과 황금채널, 미디어랩, 방송발전기금 등이 있다. 우선 종편의 의무송출이 다음달에 폐지될 예정이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종편으로 왜곡된 미디어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선 재승인 심사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종편은 그동안 두번의 재승인 심사가 있었다. 2014년의 첫번째 심사에서 A와 B가 기준점수에 미달했고, 2017년 두번째 심사에서도 A가 기준점수에 미달했으나 조건부로 통과됐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앞으로 재승인 심사를 강화해서 다음엔 점수가 미달인 종편 사는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년 ○월 ○일 ○면 [ ] 기사에서 B종편사가 2014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종편사는 해당 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상회하여 적법한 승인을 받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통상의 정정보도문 활자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섹션 기사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 제목을 24시간 고정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사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16****2018부산조정70, 71(병합) 각 정정청구**

지자체의 일방적 행정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1면에 정정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경제신문인 피신청인은 부산광역시가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구, 군의 부담금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비판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 부산광역시는 이에 대해 구, 군의 일부 부담과 관련하여 시 간부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사전협의한 바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구, 군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는 등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했다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부산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비용을 시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고 구·군의 일부 부담과 관련해서 시 간부가 각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협의하였음
- 부산시 최고정책회의에서는 시와 구·군이 동반관계로 권한과 예산, 정보를 나누어 전국 부산형 분권모델을 만들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그 일환으로서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을 합의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은 구는 합의하지 않는 등 자율적인 의사판단에 따라 진행되었음
- 부산시는 최고정책회의의 후속조치로 실무회의를 준비하고 있음

**조정결과**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사실관계가 틀린 점을 인정하여 지면 1면 및 인터넷 초기화면에 정정보도하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지는 ○년 ○월 ○일 ○면과 홈페이지에서 ▲오거돈 시장과 부산시는 초·중·고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 구·군 분담금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꼼수 ▲0월 0일 ‘부산시 최고정책회의’의 속내는 구·군 분담금 문제 해결에 초점 ▲민선7기 부산시는 소통을 외치고 있지만, 이면에는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이다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마저 보임 ▲오시장과 부산시는 시민을 위한 참다운 소통과 행정으로 신뢰를 구축해야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부산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비용을 2019년 부산시 예산으로 전액 편성하고 구·군의 일부 분담과 관련해서는 시 간부가 15개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협의 하였습니다. 또 11월27일 개최한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는 앞으로 시와 구·군이 동반관계로 권한과 예산, 정보를 나누어 전국최고의 부산형 분권모델을 만들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시민을 위한 시정과 구정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으며, 3개 구·군은 자율적인 의사판단에 따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후속조치로 시와 구군에 분권과 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상호 협의와 협력추진을 이행할 것을 알리고 실무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 1면에 보도문을 2단으로 게재한다. 단, 보도문의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도문을 72시간동안 게재한다. 단, 보도문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하며, 72시간 게재 후에는 삭제하여 열람 및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여 열람 및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사례 17****2018서울조정2443·2444, 2445·2446(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언론사의 자발적인 정정보도에 대해 조정신청하여 다시 정정보도가 이뤄진 사례****보도내용**

- 종합편성채널사인 피신청인은 공항 협력업체의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이전 보도에 대해 정정하면서, ‘노동조합 간부의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고 보도했으나 당시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졌다’고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신청인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간부 부인의 승진이 빨랐던 점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간부 부인의 승진이 빨랐던 점을 인정한 적 없으며, 초고속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직접 피신청인 측에 인정한 바도 없다.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이전 보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자발적으로 정정하면서, 신청인의 보도자료에 기초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포함시킨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익에 부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정심리 중 중재부에서는 실제 신청인의 의사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정정하도록 권유하였고, 양 측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본 방송은 지난 ○일 [ ]이라는 제목으로 “남편이 ○노조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노조 지부장이 아니라 지회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조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방송은 지난 ○월 ○일자 기사에서 [ ] 라는 제목으로, “○노조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호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지부는 간부 부인의 승진이 빨랐던 점을 인정한 적이 없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홈페이지의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위 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기하여 그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 처음 24시간 동안 위 보도문 제목이 해당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동일하게 기사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 제 2 장

## 반론보도 게재 사례

##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 사례 18

#### 2018서울조정115·116 정정·반론청구

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다는 비판 보도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내용을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상파 방송사인 피신청인은 뉴스프로그램에서 신청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시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폭리를 취해왔다고 비판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신청인은 분양전환 가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최종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분양전환 가격이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분양가격이 정당하다는 판결들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엇갈리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바로잡는다

####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수분양자들 간에 분양전환가격이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분양가격이 정당하다는 판결들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엇갈리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부당히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 취지를 반론의 형식으로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조정대상보도에 이어서 게재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경남 ○시의 한 아파트 단지. [중략]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실시공 의혹과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전환 논란으로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돼 왔습니다.

현행법상 임대기간이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입주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데 A사는 분양 전환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A 임대아파트 입주주민들은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A사가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년간 이와 관련된 소송만 100여 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A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사가 실제 사용 건축비가 아닌 현행법상 최대치의 건축비를 받을 수 있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편법을 동원해 폭리를 취해왔던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A사가 임대아파트 건설을 명분으로 토지를 싼값에 구입하고 아파트 건설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은 부분도 확인 중입니다. [중략]

임대아파트 사업을 발판삼아 대기업으로 급성장했지만 정작 서민들의 비판을 받아온 A사 임대아파트 폭리 문제에 대해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방송은 지난 ○월 ○일 [ ] 프로그램에서 [ ]라는 제목으로, A사가 편법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회사가 편법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해당 하급심에서 상반된 판결이 이루어져 현재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사례 19

2018서울조정592·593·594, 595·596·597(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해외투자의 실패 케이스에 관한 시사 대담 프로그램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가  
게재된 사례

### 보도내용

- 지상파 방송사인 피신청인은 한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신청인 기업이 남미의 부실한 기업을 몇 배나 비싸게 매입하고, 불필요한 회사를 끼워서 인수하는 등 수상한 투자를 펼쳤으며, 이는 전 정부의 자원외교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신청인은 신청인 기업이 투자한 남미의 회사는 외부 투자기관의 검토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인수한 것이며, 실패한 투자였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자한 것이라며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이 인수한 B회사는 외부 투자기관의 인수자문 및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같이 인수한 C회사도 보도에 언급된 유령회사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B회사와 함께 투자 의결하였으며, 외국 계좌로 송금한 것은 C회사의 모회사에 인수대금을 적법하게 송금한 것이다
- 매각 전 유상증자는 대위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반론보도 게재가 적합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피신청인 또한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심리 이후 양 당사자 간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협의되어 반론보도 게재 후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 ▶ 진행자1 : 오늘은 지난주 타방송에서 다룬 내용인데, A사의 수상한 투자, 그런데 이 이슈가 폭발력에 비해 충분히 화제가 되지 않아 다시 다룬다. [중략]  
A사 투자를 수상하다고 했는데 타방송에서 다룬 내용은 B사 인수인데 왜 이상한지 알아보자.
- ▶ 진행자2 : 어느날 갑자기 건설 이사회에서 위에서 내려왔다 가격도 찍어 ○억. 저기서 내려



왔다. 안건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이 A사가 100억도 안되는 회사라고 했고 인수하면 안된다고 올렸다. 사람들은 다 알죠. 이걸 위에서 짚어서 온거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진행을 했어. 그런데 이사회 진행때는 없었던 C사라는 회사를 같이 인수했다. B사에는 250억이, C사에는 550억이 들어갔다. C사는 완벽한 페이퍼 컴, 직원도 없고 유명주소만 있고 비즈니스가 없는. C사는 인수금액이 550억이다. 그리고 매각직전에 증자를 800억을 하고. B사는 D라는 자본금 80만원짜리 회사가 68억에 산다 이런 구조.

- ▶ 진행자1 : 정리하면 부실한 회산데 몇배나 뺏기해서 사준다. 살 필요 없는 회사를 사고 부실한 회사는 헐값에 팔고, 살필요 없는 회사는 뺏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 공식이 자원외교에도 적용되나? [중략]
- ▶ 진행자2 : A사의 경우는 기업평가 전에 수뇌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왔다. 우리는 B사를 800억에 산다, 공시를 한다 위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진행했던 건설 내부자의 고백인데 사고나서 중개수수료 300억원을 C사로 싸준다. (중개수수료를?) 800억 매매금에 수수료가 300억입니다. [중략] 쓴 사람의 증언이 재밌습니다. C사는 D국입니다. D국법인인데 이 돈이 E국으로 흐르더라. (페이퍼컴퍼니 주소는 D국인데 돈은 E국으로?) 돈이 E국으로. (돈이 E국의 누구계좌인가가 중요하다. 이걸 그 일을 진행한 내부자 증언?) 내부자 증언이고 대단한 구조다. [후략]

## 조정신청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방송은 지난 ○월 ○일 [ ] 프로그램의 [ ] 코너에서 [ ]라는 제목으로 A사가 ○에 투자한 B 회사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외부 기관의 인수자문 및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서 B사와 함께 C사에 대해 투자 의결하였고, D는 C사의 모회사로서 외국 계좌로의 송금은 같은 회사에 인수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례 20

## 2018서울조정1028 정정청구

모 기업 차기회장 선임과 관련한 시민단체가 특정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오피니언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오피니언 보도를 통해 모 기업의 차기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려는 외부의 움직임이 있다며, 신청인 등 다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모 기업 바로세우기 시민연대에서 후보 9명 중 8명에 대해 부적합 인물로 규정, 사실상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시민연대는 과거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했던 인사 8명이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반대 의사를 표하였을 뿐, 기업 측에서는 현재 후보가 몇 명인지에 대해 발표한 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후보자를 9명으로 특정하면서 신청인이 나머지 1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단정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현재 A기업의 회장 후보가 9명이라고 단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연대가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1명의 후보를 신청인이 지지하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A기업은 후보가 몇 명인지 발표한 적이 없고 신청인 또한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적이 없으므로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이 회장 후보 중 특정 인물을 지지한 바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8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A기업 바로세우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최근 O기업 회장 후보로 꼽히는 인물 대부분을 부적합한 인물로 규정했다.

현재 회장 후보로 거명되는 B 사장과 C 사장, D 전 사장, E 전 사장, F 기업 대표이사 사장, G건설 대표이사 사장, H기업 전 원장, I기업 사장, 전 J기업 부회장 등 9명이다.



시민연대는 “A기업이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민족기업이지만 최근 10년 동안 처절하게 망가졌다”며 J 전 부회장을 제외한 8명이 “과거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A기업이 바로 서서 세계적 철강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시민단체나 노동단체가 A기업 회장 선임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나쁘게 볼 일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부정부패나 비리에 관련된 인물이 A기업 경영을 맡는 것은 누구든 나서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감시나 비판을 하는 단체가 후보 선출에 개입하게 되면 선을 넘는 일이다.

물론 시민연대가 대놓고 특정 인물을 A기업 회장 후보로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 [중략]

그러나 시민연대의 주장은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적지 않다. 이 단체가 꼽는 부적격 인물을 빼면 현재 거명되는 후보군 가운데 남는 이는 J기업 전 부회장뿐이기 때문이다.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신문은 ○년 ○월 ○일자 [ ] 제하의 기사에서 ‘A기업 바로세우기 시민연대’가 차기회장 후보 9명 중 8명의 후보에 대해서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기업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참여단체 중 ‘B운동본부’ 측은 “회장 후보는 총 20명이며, 시민연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 바 없고 지지할 의사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면 초기화면 상단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노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또한,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성하여 각 사업자가 게시한 기사 하단에도 동일한 내용의 반론보도문이 게재되도록 한다.



## 사례 21

## 2018서울조정1517·1518, 1519·1520(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군대 내 사망사건을 다룬 보도에 대해 부대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 게재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종합일간지인 피신청인은 우울증을 앓던 군인이 투신해 숨졌다고 보도하면서, 배치부대가 해당 군인에 대한 신상기록을 확인하지 않아 뒤늦게서야 배려병사로 분류했고, 이후에도 관찰과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병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신청인 부대는 사망한 병사의 부적응 상황이 파악된 직후 정기적인 상담 및 진료를 권유했고, 사망 이후에도 유가족을 조문하고 위로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해당 일병이 전입한 후 부적응 상황을 확인하여 상담관이 정기적으로 상담토록 했고, 그린캠프 입소 및 정신과 진료를 권유했으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 사망할 당시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 중이었다
- 수방사 보통검찰부의 최종 수사 결과 개인적 원인으로 인한 자살로 판명되었다
-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병력관리 미흡이 사망의 전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 조정결과

- 중재부는 신청인 부대의 신청취지를 반론보도의 형식으로 게재하는 방안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우울증을 앓던 군인이 한강에 투신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살 징후’를 보이는 병사에 대해 군 당국이 관리를 소홀히 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A일병은 입대 8개월 만에 병가를 내고 나와 서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다.

[중략]

유가족에 따르면 A일병은 입대 전 정신과 진료에서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과 함께 10여 차례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정신질환 특성상 증상의 기복이 커 지난해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는 ‘양호’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입대 이후 우울증이 다시 심해졌다. 신병교육대에서 받았던 복무적합도 검사에서도 ‘정신건강 전문가의 정밀진단 요구’ 소견이 나왔다. 한 달 뒤 2차 검사에서도 ‘정신 건강’ 부문에서 ‘주의’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A일병은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다.

자대 배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연대 인사장교는 인솔자인 주임원사에게 A일병이 신병교육대에서 ‘배려병사’로 지정된 자료 일체를 전달하지 않았다. A일병이 배치된 부대 또한 신상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일병을 배려병사로 분류하지 않았다.

한 달 뒤에야 부대는 뒤늦게 A일병의 상태를 파악하고 배려병사로 분류했지만 지휘관의 적극적인 관찰과 관리가 뒤따르지 않았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 A일병과의 면담에서 “가정과 연계해 관리하고, 정신과 진료와 심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수차례 내놨음에도 중대장 등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가족과 연계한 병력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가족들은 A일병이 군에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A일병 사망 후 헌병대가 조사에 나섰고 “병력 관리에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폭행 및 가혹행위 등 병영 갈등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징계는 중대장과 인사과장에게 각각 ‘견책’이 내려진 게 전부였다. 이에 유족 측은 “군은 아들을 죽게 한 군인에게 솜방망이 징계만 내렸고, 유족에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군 측은 “A일병 면담 시 그린캠프 입소와 정신과적 치료를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지는 ○월 ○일자 ○면 [ ] 제목의 기사에서 ‘A일병이 배려병사로 분류됐지만 지휘관의 적극적인 관찰과 관리가 뒤따르지 않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면담 후 가정과 연계된 관리에 대해 수차례 소견을 내놓았지만 부대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대는 “A일병은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 중에 사망했고, A일병의 자대 전입 한 달 후 부대생활 부적응을 확인해 병영생활상담관이 월 1회 정기적으로 상담했으며, 상담 결과에 따라 정신과 진료 및 보호관리 등급 상황과 함께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관심을 기울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부대는 “A일병의 자대 전입 후 가정과 연계한 병사 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부대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가 이뤄졌고, 대대장 등 16명이 A일병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으며, 지난 ○월 ○일 수방사 보통검찰부 수사 결과는 A일병이 개인적인 원인으로 자살했다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위 반론보도문을 ○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까지 위 반론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면 기사목록 상단 (5번째 이내)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에 따라 이행한 반론보도가 표시된 조정대상보도를 전송한다.

**사례 22****2018서울조정1576 손배청구**

소비자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신청인 제품의 문제를 지적한 보도에 대해 반론 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보도 중 업체명, 일부 표현 등을 삭제, 수정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업체가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우연히 라텍스가 아닌 스펀지임을 발견했고, 업체 측이 말을 바꾸던 끝에 해당 소비자를 형사고소했으며, 한편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체불 문제도 불거졌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 업체는 업체명과 브랜드를 노출시킨 채 피신청인이 일방의 주장만을 전달했으며, 동의 없이 제품 및 공장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심리 결과 보도내용 중 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임금 체불과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며, 소비자 제보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최근 '라돈' 검출 문제로 침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여름 본지가 단독 보도했던 'A브랜드 가짜 라텍스 침대'에 대해 판매업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해 진실공방이 불거졌다.

A브랜드 측이 보도와 관련해 반론을 제기해 오면서 본지는 사실관계 검증에 나섰다.

보도1년 만에 취재진이 다시 연락을 취한 피해 제보자 김 씨는 "라텍스인 줄 알고 산 침대가 스펀지인 것도 분통 터지는데 형사 고소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본지가 ○에 위치한 A브랜드의 공장에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재취재해 진실 여부를 들춰 보았다. 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 제보자 김 씨가 주장하는 사건 전말

“구매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침대 꺼짐 현상이 발견돼 A/S를 요청했다가 우연히 침대 커버를 벗겨봤는데 라텍스가 아닌 스펀지가 들어 있었어요. 색도 심하게 변해 있었어요”

지난해 본지를 통해 하소연한 제보자 김 씨는 다시 한 번 분통을 터뜨렸다. [중략]

“상담원은 A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했다가 영업팀장이 매트리스 상태가 많이 훼손되어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일을 크게 만들어서 교환을 못해 주겠다고 형사 고발을 했어요.”

올 해 9월, 김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략]

#### ◇ A브랜드 측 “단순 실수였고 오 배송 때문” 반박

업체와 취재 날짜를 잡았지만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 “담당자가 다쳤다”는 다양한 이유로 연거푸 불발되면서 취재진이 결국 해당 업체의 공장에 기습 방문했다. [중략] 취재진이 소비자 분쟁 건에 대해 묻자, 오배송률이 높았다고 해명했다.

업체 직원은 “커버를 씌우면 내부 소재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2017년에 직원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오배송이 많았다”며 소비자의 거친 언행 때문에 처리가 안 됐다고 둘러댔다.

[중략] 업체가 고소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김 씨가 전해 준 수원지검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 소송까지 진행되지도 않았다.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인터넷 신문은 ○년 ○월 ○일자 [ ] 제목의 기사에서 소비자 피해제보 등의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는 “다른 물품이 오배송 되었거나 소비자가 라텍스 매트리스 제품 특성을 오해한 결과”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보도문을 전송한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업체명 및 브랜드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본문 내용 및 사진설명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다.
- 본문 일부 삭제
  - “◇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 문제도 불거져” 부터 “결국 매트리스 오배송 문제로 소비자와 다툼까지 벌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매 업체의 과실이 단순 실수로 묵인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까지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 포함된 제품 및 신청인 업체 사진을 모자이크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사례 23

## 2018충북조정62, 63(병합) 각 정정청구

대학의 재정상태 악화 등 부정적 보도에 대해 대학의 반론을 충실히 반영하여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역 케이블방송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대학에 총장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낙제점을 받는 등 재정적 압박이 높은 상황이라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 대학은 총장 및 부총장 임명에 대한 내부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인 전입금의 규모와 비율이 도내 1위를 차지해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교육부의 역량진단은 최종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 취지를 방송과 인터넷에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A대학교 B총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되는 가운데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A대는 최근 불법 기숙사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50억여원을 부담하면서 재정압박이 높은 가운데, 안팎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대학교 인적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총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지난해 6월 C총장이 돌연사퇴한 뒤 대행직을 맡은 B 총장대행의 임기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면 물러날 예정이었지만, 아직 총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화녹취〉 A대학교 측 관계자 : “(총장권한대행은) 1년 임기로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은 지나셨는데 초빙교원이시고, 8월 31일자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계속 할 것이냐...”

부총장 역시 몇 달 전 임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학교 안팎의 악재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던 점입니다. 올 초 불법 기숙사 건축물에 부과된 53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면서 재정적 압박이 높은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낙제점을 받아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큼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방송은 ○년 ○월 ○일 [ ]라는 제목으로 A대학교 인적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있고 올 초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담 때문에 재정적 압박이 높은 상황이며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낙제점을 받아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대학교는 총장 및 부총장 임명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부총장은 임기 만료 후 초빙교수로 재계약해 정상 출근하는 것이며, 학교의 법인전입금 규모와 비율은 매년 총복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재정에 문제가 없고 학내에서 인적 쇄신 요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바 없으며 해당 보도 당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타내도록 한다. 단, 해당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 뉴스면과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 24

## 2018서울조정1711 정정청구

신청인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관할 기관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반론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모 음료에서 파리와 구더기가 나왔고, 음료 제조 업체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는 소비자의 제보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 업체는 식약처의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제조공정상 들어간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소비자에게 성실하게 응대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식약처의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생산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응대했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조정대상보도의 제목을 수정하고 신청인 업체의 입장을 별도의 반론보도로 게재하며, 네이버포스트 및 유튜브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A제약 ‘B음료’를 마시던 중 파리와 구더기가 나와 소비자를 경악하게 했다. 더불어 사태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해 소비자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어 고객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C씨는 지난 8일 본지에 B음료를 마셨는데 이물질이 느껴져 뱉었더니 파리가 나왔다고 제보했다. 더불어 남은 음료를 컵에 부었더니 구더기가 살아 움직이고 있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1시경 음료를 마셨고, 고객센터에 신고하니 오후 4시쯤 A제약 측 직원이 C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C씨는 광동제약 직원들이 당장 사과보다는 책임회피를 일관하는 태도에 상당히 불쾌



했다는 전언이다.

A제약 직원은 “제작과정에서 들어갈 수 없고, 가열처리로 인해 파리가 들어가더라도 살 수가 없다”며 “먹는 도중에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C씨는 그럼 꿈틀거리는 구더기는 뭐냐고 따지자 음료제작 중에 유입된 것이면 파리 날개도 타 없어졌을 거라고 반박했다는 것. 격분한 C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를 보고 A제약 측은 “샘플을 전해줬으면 고급건강식품 주려고 했다”는 말을 했다. [중략] 현재 식약처에서 제품을 가져가 심의 중으로 결과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 한편 이에 대해 A제약 관계자는 “제조공정상 발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계기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월 ○일자 [ ] 라는 제목으로, A제약의 ‘B음료’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고, 업체 측이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제약 측은 식약처에 문제된 사안에 대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관할지역인 ○시 ○출장소 환경위생과의 카탈라아제 실험 결과, B음료에서 발견된 이물질들이 제조공정에서 혼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공문이 확인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더불어 업체 측은 문제 제기를 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응대했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부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제목을 [ ]에서 [ ]로 수정한다.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부터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3번째 이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박스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 유튜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아래 URL 주소들의 기사 및 동영상들을 모두 삭제한다. (URL주소 생략)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25****2018서울조정1712, 1713(병합) 각 반론청구**

국가보훈제도의 맹점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반론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시사주간지를 발행하는 피신청인은 군부대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의 사례를 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고, 등록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인 국가보훈처는 전역 이전, 당일, 이후에 수 차례 안내하였고, 등록신청 또한 신청서와 부상경위서만 제출하면 되는 등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해 보훈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에게 등록신청 및 보훈제도를 설명하였다
- 전국 보훈관서 등록담당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고, 절차가 간편하고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다

**조정결과**

- 심리 결과 조정대상보도 중 제목을 수정하고 국가보훈처의 신청취지를 반론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2017년 8월 ○군 육군 부대에서 일어난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인 A 예비역 병장은 “국가 가 나를 버렸다”고 말했다.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큰 사고였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는데 장약(추진 화약)이 터지면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병장은 부상자 4명 가운데 가장 크게 다쳤다. 전신 55%에 2~3도 화상 판정을 받았다. 안와골절로 시력도 크게 떨어졌다. A병장은 군병원을 거쳐 현재 화상전문 병원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략]



뒤늦게 국가유공자제도를 알게 됐지만, 등록 절차 역시 쉽지 않았다. 사고 경위나 진단서 등을 피해자가 직접 구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A병장의 어머니는 “피해자들은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류를 챙기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다친 장병들을 보면 거의 100만원씩 내고 행정사나 법무사에게 서류를 맡겨 진행한다”고 말했다. [중략] 이 병장 뿐만이 아니다. 기자가 만난 대부분의 군 사고 피해자들은 국가유공자나 보훈제도와 관련된 안내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사고를 겪었지만 보훈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광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대표는 “전역한 지 오래 지나 국가유공자 제도를 알았다’며 지금 신청해도 되는지 물어오는 군 사고 피해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중략]

이렇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뒤늦게 신청하거나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군 사고 피해자들이 많지만, 군대나 군병원에서는 보훈제도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 안○○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서울 대표는 “병사들에게 보훈제도를 교육할 의무가 있는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들도 보훈제도를 모르는 게 현재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군 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 훈령 규정에 군과 군병원이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군과 보훈처가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한 홍보와 광고에 쓰는 예산이 제한적인 점은 있다. 더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년 ○월 ○일자 ○면에서 [ ] 제하의 기사에서, 국가보훈처가 軍 사고 피해자들에게 그 제도 및 혜택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으며 보훈제도 적용을 위해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상당한 비용을 들여 법무사 등을 통해 그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에게 전역 직후 직접 등록신청을 안내하고 치료



지원과 보훈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전국 보훈관서를 통해 군병원 등 보훈제도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모든 군 전역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때 전국 27개 보훈관서의 등록 담당 공무원이 등록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며 ‘등록신청서’와 ‘부상경위서’만 제출하면 그 외 진료기록, 헌병대 사건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는 육군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에 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기하여 게재하되 처음 24시간 동안에는 ○면 기사목록 초기화면에 노출하고 그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또한, 처음 24시간 게재 후에도 보도문을 동일하게 기사DB에 보관하여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각 조정대상보도 제목을 「[“국가가 나를 버렸다” ①]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 및 「[“국가가 나를 버렸다” ②] 軍 사고 피해자 울리는 국가보훈제도」로 수정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각 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 사례 26

## 2018서울조정2151·2152 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의 발언 내용을 일부만 발췌 보도한 데 대해 발언의 본래 취지를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상파방송사인 피신청인은 키즈카페에서 제공된 케첩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식약처 소속 공무원인 신청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 ‘구더기는 뱃속에서 사멸한다’는 등의 발언을 발췌보도하였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전체 발언내용 중 극히 일부를 발췌하고 취지를 왜곡함으로써 구더기가 들어간 음식물을 섭취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처럼 독자들이 오해하여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살아있는 구더기는 식약처 규정상 보고대상이 아니고 해당 건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여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사안이었으며,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다

## 조정결과

- 중재부에서는 해당 통화내용 전체를 제출하도록 자료제출명령을 내렸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본래의 발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론보도하도록 양 측에 권유하였다. 심리 중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 온라인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1

한 유명 키즈카페에서 준 토마토케첩에서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걸 먹었던 아이와 엄마 모두 식중독 증상을 보였는데, 케첩 제조사와 키즈카페 모두 자기 탓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신고받은 식약처의 대처도 황당합니다.

토마토케첩 사이를 뭔가 꿈틀거리며 기어 다닙니다. 자세히 보니 흰색 구더기로 수십 마리나 됩니다. 지난 4일 장 모 씨가 4살 난 딸과 함께 경기도의 한 유명 키즈 카페에서 감자튀김을 찍어 먹던 일회용 토마토케첩에서 나온 겁니다. [중략]

하지만 식약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 식약처 직원 :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뺏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하거든요. “살아 있는 이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식약처 규정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 식약처 직원 : 살아 있는 곤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그건 조사를 안 합니다.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지 않자 키즈 카페와 케첩 제조사, 그리고 유통업체 모두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후략]

## 조정대상보도2

한 유명 키즈카페에서 나온 케첩에서 살아있는 구더기가 나왔는데도 관련 업체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식약처도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 식약처는 오늘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유명 키즈 카페가 제공한 일회용 케첩에서 발견된 구더기 수십 마리.

감자튀김을 이 케첩에 찍어 먹었던 어머니와 4살 난 딸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치료받았습니다.

케첩 제조사가 식약처에 신고했지만 식약처는 조사조차 나가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음식물에 살아 있는 유충이 든 것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 식약처 직원 :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구더기는) 뺏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하거든요.

보도가 나가자 인터넷에는 비난 댓글 수천 개가 쏟아졌습니다.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월 ○일 및 ○일자 [ ] 제하의 방송 등에서 키즈카페에서 제공된 케첩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사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한 당시 식약처 직원은 “살아 있는 구더기는 식약처 규정상 보고대상이 아니고 보도 당시 해당 건은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가 끝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사안이었으며, ‘뱃속에서 사멸된다’는 내용은 애벌레(구더기)를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부분의 일부를 편집보도한 것이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을 완료한다.
  - 위 보도문 제목을 피신청인 홈페이지 접속시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에 1주일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 홈페이지 DB에 보관하여 [ ]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이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보도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위 사항을 즉시 전송하여 포털에서도 위 사항들이 검색되도록 한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 제 3 장

## 추후보도 게재 사례



##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 사례 27

2018서울조정545·546, 547·548(병합) 각 추후·손배청구  
미투관련 보도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중재부가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

#### 보도내용

- 시사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조교인 대학원생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강요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각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린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추후보도로서 게재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지난 0월 0일, A대 B학과 대학원생 C씨가 8일째 ‘1인시위’를 견뎌내고 있었다.

시위는 건물 ○층을 향한다. B학과 D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곳이다. 한때 C씨가 자주 드나들던 일터였다. [중략] 지난해 ○월 ○일 오후 ○시께, D교수가 C씨를 학교 근처 주점으로 불렀다. “내 가방을 들고 와라” “논문 지도를 해줄 테니 (논문) 연구계획서도 가져오라”는 지시였다. D교수는



술 마실 때면 종종 C씨를 술자리로 불러냈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운전까지 시켰다.

술잔이 돌고 있었다. D교수, D교수의 또 다른 제자, A대에서 강의하던 E교수가 함께 있었다. 처음부터 D교수의 말이 거칠었다. “C씨는 남자였어야 해. (중략) 전 조교는 총각 교수(나)한테 오는 애가 밤에 일 시키려고 부르면 옷을 이상하게 입고 향수도 뿌리고 왔다. 갠 너무 여자로 어필해서 문제였는데 애(C씨)는 함부로 건드렸다간 검찰에 끌려갈 것 같아.” D교수의 이야기를 듣던 E교수가 갑자기 욕을 했다. [중략]

“너희 교수(D교수)가 결혼도 안 한 총각이니 가끔 만져주고 그래.” 조 교수의 말에 갑자기 D교수가 이씨의 왼쪽 팔목을 덤석 잡더니 자기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어딜 만져달라 그럴까, 여기 만질까? 여기?” C씨는 팔목에 힘을 쥐 정 교수의 몸을 건들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술집 여자가 된 것처럼” 강한 수치심이 치밀었다. [중략]

자퇴를 길게 고민할 여유도 없었다. 아팠던 일주일 사이, 학과 사무실로부터 ‘조교가 교체됐으니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전자우편으로 받았다. 이유를 따져 물으려 했지만 정 교수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오히려 연구실 출입만 정지당했다. 이후 공동연구조교에게서 “(업무 불성실로) 내가 해임되면서 너(C씨)도 공동 책임으로 해임됐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사유만 전해들었다. 성추행 사건과 연관된 부당해고가 분명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학교 양성평등센터를 찾아가 신고했다. 한 달여 뒤엔 검찰에 고발했다. 강제로 팔을 잡아당긴 지도교수 D교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욕설을 한 조 교수는 ‘모욕’ 혐의였다. E교수의 발언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특별한 고용관계가 없는 외부 교수라 처벌 근거가 없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중략]

상황이 좋지는 않다. 검찰은 D교수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지만, 앞서 3월 경찰은 D교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이 벌어진 주점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저장 기간(15일)은 이미 끝났고, 술자리에 함께한 다른 제자도 C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상태다. D교수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내 스스로 거짓 말 탐지기(조사)까지 받았다. (C씨의) 거짓 성희롱 주장에 대해 이미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조교 해촉과 관련해선, 술자리가 있기 전인 11월 14일 이미 (업무 불성실을 이유로 C씨에게) ‘해촉될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 적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E교수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지는 ○년 ○월 ○자 [ ] 제하의 기사에서 A대학교 B학과 D교수가 대학원생 C씨를 성추행했고, 그 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C씨를 조교에서 부당하게 해임했으며, C씨는 지도교수 변경 승인이 되지 않아 제적 처리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D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C씨의 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C씨는 재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C씨가 D교수를 강요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별도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려 확정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피신청인 매체 C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해당 보도문의 제목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과 같게 하며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 본문의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C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C면 첫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한다. 단, 해당 추후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활자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위 사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면과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 28

## 2018서울조정1508·1509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무죄 확정되어 추후보도한 사례

## 보도내용

-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피신청인은 철거민 관련 협회의 대표인 신청인이 철거민들을 속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겨왔고,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2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되었다며 추후보도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보도에 언급된 혐의와 관련, 서울북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선고, 검찰에서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 조정결과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무혐의사실을 밝히는 추후보도를 게재함으로써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서울북지검 ○부는 철거민들을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철거민협의회 A 상임대표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대표는 2013년부터 1년여 간 서울 ○구 ○지역 회원 B모씨에게 집회에 참가하는 등 투쟁활동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대표는 1980년대부터 철거민 운동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비리 추문에 휩싸여 잠시 활동을 접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지역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을 전부 고소인 B씨의 돈인 것으로 보고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회원 일부는 오는 ○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 회원도 이 대표를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입증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정신청 후 보도문

본 신문은 ○년 ○월 ○일 홈페이지에서 [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북부지검 ○부가 철거민들을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철거민협의회 A 상임대표를 구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 보도와 관련하여 A대표의 혐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A대표가 1990년대 비리추문에 휘말려 활동을 접기도 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례 29

## 2018서울조정1721·1722 추후·손배청구

언론사 간부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노동조합이 검찰에 고발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 중재부가 추후보도 게재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

## 보도내용

- 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이 언론사 간부인 신청인을 노동조합이 금융실명제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보도에 언급된 혐의와 관련,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무혐의 사실을 추후보도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1

전국언론노동조합이 A언론사 B상무를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오전 노동조합과 기자협회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상무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사측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언론은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석탄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에 납품해왔던 페이퍼컴퍼니 'C업체' 설립자 D씨의 죽음을 다루며 B상무가 환치기상을 통해 D씨에게서 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C업체 실소유자와 친분이 있는 B상무가 2014년 말 1억 원을 소유자에게 입금하고 모 업체 주식을 제3자 배정받았다고 보도했다. B상무가 투자한 주식은 배당 직후 주가가 급등해 주가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해당 회사의 배후에 A언론사 간부가 연루됐었다는 소문이 퍼진 바 있다. [중략]

B상무는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수사로 오히려 저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 조정대상보도2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A언론사 B상무의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노조는 B상무의 사의 소식을 전하며 “검찰 수사가 임박했는데 나가서 수사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진작에 사측이 파면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일 B상무를 금융실명제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언론은 인도네시아 석탄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에 납품해왔던 모 페이퍼컴퍼니 설립자인 D씨의 죽음을 다루며 B상무가 환치기상을 통해 D씨에게서 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자와 친분이 있는 B 상무가 2014년 말 1억 원을 소유자에게 입금하고 모 업체 주식을 제3자 배정받았다고 보도했다. B 상무가 투자한 주식은 배당 직후 주가가 급등해 주가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B 상무는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로 오히려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지는 ○년 ○월 ○일 [ ] 제하의 기사에서 A언론사 B 전 상무가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자인 C 모씨로부터 환전상을 통해 4천만 원을 받아 외환거래법을 위반하고, D업체 주식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차명으로 송금해 금융실명거래법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E언론사와 노동



조합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혐의에 대해 A언론사 B 전 상무는 2018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단,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접속 시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에 ○년 ○월 ○일시간 동안 위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 홈페이지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피신청인 홈페이지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이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기사들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도 위 사항을 즉시 전송하여 포털에서도 위 사항들이 검색되도록 한다.



### 사례 30

#### 2018서울조정2412 추후청구

신청인의 횡령 혐의를 보도했으나 검찰의 무혐의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히 추후보도를 게재한 사례

####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업사의 재산을 차지하고 임직원도 내쫓은 ‘악덕기업인’이라는 취지의 동업사 직원들의 규탄시위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보도에 언급된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조정결과

-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무혐의 사실을 밝히는 추후보도를 게재함으로써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A협회와 B기업 임직원 일동은 10일 C중앙회 부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C중앙회 부회장(D사 대표)은 흡수합병 후 동업하다 최근 동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 결별을 선언한 B기업에 10억 원 가량의 가스용기와 15억 원 상당의 라이선스 등 30억 원 가량의 재산을 즉각적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B기업 임직원들에 따르면 D사와 B기업은 고정자산과 영업라이선스 등을 D사 측에 양도와 직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지난 ○년 ○월 공동사업을 의결했다. 당시 D사는 B기업을 대표하는 E씨와 D사 지분 50%를 보유한 F씨의 아들인 G씨가 공동대표를 맡아 운영했다.

그러나 공동대표가 들어선 이후 D사의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각종 불법과 탈법 탈세 등이 발각



되면서 지분 25%씩을 보유한 C대표 일가가 D사를 장악, 경영을 맡았다. 하지만 두 동업사는 내부갈등에 따른 불신으로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B기업 임직원들은 D사 대표 등이 B기업 측 대표가 D사의 비리를 캐낸 것에 앙심을 품고 B기업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소를 제기한 뒤 임시주총을 열어 해임조치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월 B기업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B기업 측은 D사의 횡포에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30억 원 가량의 재산 이전을 요구했으나 D사가 번번이 이를 묵살하자 지난 6월 C대표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횡령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고양지청에 고소한데 이어 이날 C대표의 부회장에서 퇴진 규탄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B기업에 일했던 직원들이 C대표의 횡포로 직장을 잃고 가계대출 등으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자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C중앙회 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후략]

### 조정신청 후 보도문

C부회장은 지난 ○월 ○일 본지가 보도한 [ ] 제하의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본 신문은 이 기사에서 “B기업 측은 D사의 횡포에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30억 원 가량의 재산이전을 요구했으나 D사가 번번이 이를 묵살하자 지난 6월 C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횡령혐의 등으로 고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C부회장 측은 “C부회장이 10월 2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경제기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기사의 ‘횡령 혐의’를 ‘무혐의’로 바로 잡습니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 제 4 장

## 손해배상 지급 사례



##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 사례 31

#### 2018강원조정3,4(병합) 각 손해청구

성탄절 연휴 풍경에 대한 스케치 보도를 하면서 초상을 공개한 데 대해 손해배상과 기사열람·검색 차단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역민방인 피신청인은 성탄절 연휴를 맞아 관광지가 인파로 북적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신청인들의 모습을 뉴스프로그램 및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당시 촬영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보도 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후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였다. 심리 중 중재부는 가벼운 스케치 보도라 하더라도 촬영 및 보도에 대한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50만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유튜브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또한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사례 32

## 2018서울조정26·27 정정·손배청구

업체간 댓글공작 등 경쟁사 비방 행태를 비판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업체가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대행사를 동원, 주요 포털 사이트 내 허위 게시물과 기사 내 악성댓글, 각종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경쟁사의 비방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댓글 사건은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였으며, 보도에 언급된 무단 DB크롤링, 디도스공격,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아니라 경쟁업체가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청인 업체가 가해자로 인식되도록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아래와 같은 취지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경쟁사에 악성댓글을 단 혐의는 C 부대표 및 D 전 홍보이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또한 무단 DB크롤링과 디도스공격,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신청인이 아닌 경쟁사 B사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DB크롤링, 디도스공격 등에 대해서는 B업체가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에서 일어난 것으로 독자가 오해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악성댓글 쟁점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별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8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하여 심리 중 합의가 이루어졌다.

## 조정대상보도

한때 주요 정치이슈에서 논란을 빚었던 조직적인 댓글공작이 사회계통을 넘어 4차 산업혁명 핵심동력인 스타트업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논란의 주인공은 도덕적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A업체이다.



업계에 따르면 A업체는 경쟁사 비방을 목적으로 악성 댓글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유포하는 등 부정 여론을 조장한 혐의로 B업체가 고소를 제기하면서 지난 3월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C부대표와 D 전 홍보이사 등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바이럴전문대행 E사를 동원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포털사이트 내 허위 게시물(카페·블로그)과 기사 내 악성댓글, 각종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경쟁사의 비방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A업체는 전문 대행사를 동원해 경쟁사인 B업체를 비방하는 게시물과 댓글게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한편 A업체와 B업체는 현재 무단 DB크롤링과 디도스공격,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댓글공작 혐의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계 상위권 주자이자 도덕적 이미지를 구가하던 A업체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년 ○월 ○일자 기사목록에 [ ] 라는 제목으로 A업체가 C부대표와 D 전 홍보이사 등 고위임원들을 중심으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경쟁사 음해목적 댓글공작을 한 것처럼 묘사하였고, 또한 현재 A업체가 무단 DB크롤링과 디도스공격,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댓글을 단 혐의는 A업체의 C부대표와 D 전 홍보이사과 관련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단 DB크롤링, 디도스공격,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A업체가 아닌 B업체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고방법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면 초기화면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행사항을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 33**

**2018서울조정1220 손해청구**

부정적인 취지의 보도에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여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보도내용**

- 중앙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모 지자체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국 꼴찌라는 취지의 기사에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신청인과 미성년자인 딸의 사진을 삽입하여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 없이 촬영한 후 부정적인 취지의 보도에 사진을 삽입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후 기사의 열람·검색을 바로 차단하였고, 뉴스통신사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중재부는 직권으로 손해배상금 25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 모두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사례 34

### 2018서울조정1294 손해청구

타 방송사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원 보도와 달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손해배상과 기사열람·검색 차단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타 방송사의 보도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모 기업에서 퇴사한 여직원이 사내 성폭력 문제를 폭로해 회사가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사내 성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 소속기업, 퇴사시기 등을 적시하는 등 신청인의 신원이 추정 가능하게 보도하였고, 신청인이 제보하거나 폭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로했다'는 등으로 표현하여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조정결과

- 피신청인은 심리 이전에 해당 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였다.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타 방송사의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원 보도와 마찬가지로 신원 추정이 가능케 하였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최초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조정사건은 중재부에서 손해배상금 300만원 지급 및 기사열람·검색을 차단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양 당사자 모두 이의신청하여 자동소제기되었음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사례 35**

**2018서울조정1418·1419 정정·손배청구**

유명 유튜버의 노출사진이 유포된 사건을 다룬 보도에서 이름이 유사한 신청인의 사진을 잘못 게재한 데 대해 손해배상한 사례

**보도내용**

- 시사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유명 유튜버의 노출사진 유포사건을 전하면서 해당 유튜버와 이름이 유사한 신청인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명 유튜버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잘못 보도하였고, 자신의 초상권을 명백히 침해하였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은 유명 유튜버 A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조정에 앞서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고 이름을 수정하였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사례 36

## 2018서울조정1450·1451 정정·손배청구

기사와 무관한 요양원을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보도한 데 대해 신청인과 무관하다는 알리보도와 함께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종합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민간요양원 시설의 위법한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노인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모습 사진을 게재하였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의 특정 내용과 무관하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진에 노출된 요양원은 실제 노인학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민간요양원 시설의 위법한 인건비 절감이 아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로 기인한 것이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손해배상과 알리보도 게재 방안을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5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해당 사진은 참고자료로서 노인학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알리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일로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돌봄의 탈가속화’라는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제도의 손발이 되는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고강도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년차 요양보호사인 ㄱ씨는 지난 4월 노인학대와 공동감금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민간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을 장시간 잡아두고 강제로 잡아끌어 의자에 앉히는 등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고령의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행동을 제한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결박·격리시켜 놓아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이면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있음을 인정했다. 7씨 등 요양보호사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돌보면서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을 함께 돌보기에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많지 않다. 민간요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환자 유치를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해졌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 요양원 내부 사진 게재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지는 지난 ○월 ○일 [ ] 는 제목으로 노인학대의 원인이 민간요양원들의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필요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면서 기사 중간 특정 요양원 이름이 노출되는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참고자료일 뿐, 특정 요양원과 노인 학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37****2018서울조정1489 손해청구**

유명 유튜버 노출사진 유포 사건과 관련, 사건과 관련없는 신청인 스튜디오의 건물 외관 및 내부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상파방송사인 피신청인은 유명 유튜버의 노출사진 유포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를 찾아가 ‘현재는 다른 사람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는 멘트와 함께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를 촬영, 방송하는데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고, 유포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외관 및 내부 일부가 드러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신청인이 방송화면에 보도되는 것을 거부한 촬영 원본 영상을 확인하였고, 양 당사자에게 적절히 합의할 것을 권유,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심리 이전에 피신청인은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였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사례 38****2018서울조정1606·1607 정정·손배청구**

언론사간 조정사건에 대해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언론사가 사기의혹이 있는 보물선의 인양기업 측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보물선의 인양 기사를 쓴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물선의 인양 관련 보도가 광고 게재와 무관하고, 2건의 광고에 대해 일반적인 광고비를 받았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실 확인 결과, A일보는 B그룹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광고를 수주하였거나 타 언론사에 비해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집행 받은 사실이 없다
- A일보의 보물선 인양 관련 기사 보도가 광고 게재 및 광고비 집행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양 당사자 간 손해배상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재부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5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호 인양을 담보로 코인을 모집해 논란이 된 B그룹에 대해 ‘사기’ 의혹이 제기된다. 싱가포르 B그룹을 중심으로 다단계 영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언론이 돈을 대가로 0000호 인양 관련 보도를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호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지난 17일 B그룹은 ○호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호는 ○함대 소속으로 일본 함대와 해전을 벌이다 침몰한 배다. ○함대는 보급을 위해 육지를 오가며 경리함에 상당한 금괴와 금화, 골동품 등을 싣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 0000호는 ‘보물선’으로 전설처럼 내려져오고 있다. B그룹



의 발표 후 ○호는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도배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호의 실존 여부부터 보물의 유무, ○골드코인까지 국민들의 이목이 B그룹에 집중됐다. [중략]

결국 B그룹의 ○호 인양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수의 언론은 연일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B그룹을 압박하고 있다. 경찰도 B그룹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B그룹 ○호 발견 주장 때와 지난해 C그룹의 ○호 인양 시도 보도 행태를 보면 언론 역시 이번 사기 논란에 일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월 ○일자 A일보 ○면에는 [ ] 기사가 게재돼 있다. A일보는 “최근 다시 ○호 인양에 나선 C그룹은 D건설 전 임원들이 ○년 ○월에 세웠다. C그룹 회장은 D건설 본부장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이랬던 A일보가 지난 ○일 C그룹에서 파생된 B그룹이 ○호 발견을 발표했을 당시에 도, B그룹이 ○년 만에 ○호를 ○도 해역에서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중략]

A일보의 이 같은 기사에 광고가 한 몫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관련 취재를 진행한 모 언론사 취재기자는 본지에 “B그룹이 A일보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다고 했다”고 전해왔다. B그룹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 역시 “A일보에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지는 ○년 ○월 ○일자 [ ]이라는 제하 기사에서 “A일보의 보도는 의문을 자아내기 충분하다...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A일보의 이 같은 기사에 광고가 한 몫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B그룹이 A일보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다고 했다”, “A일보에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일보는 B그룹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한 사실은 있으나 두 차례에 불과하고 타 언론사에 비해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집행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A일보의 인양 관련 기사 보도가 광고 게재 및 광고비 집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고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면에 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처음 24시간 동안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머릿기사 하단 기사목록에 노출하고, 해당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동일하게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또한, 처음 24시간 게재 후에도 해당 보도문을 기사DB에 보관하여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사례 39

#### 2018경기조정179·180 정정·손배청구

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보도한 것에 대해 중재부가 관련 판결 내용을 토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기사열람·검색 차단을 결정, 당사자가 동의한 사례

#### 보도내용

- 특수일간지를 발행하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건설업체에 높은 이자로 사채를 빌려준 뒤 건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했다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하였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건물 소유권 이전 관련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법원의 판결을 통해 차용금 총 21억 원에 대한 월 이자가 2.5%였음이 밝혀졌고 같은 판결을 통해 차용금 외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이전해 주기로 한 사실, 법무사 사무원에게 6억 원을 빌린 이자로 3개월 간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신축 오피스텔의 시가는 37억 여원이었다는 사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용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청산금을 건설업체에 지급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미지급 잔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건설업체가 소유권말소소송을 취하려는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도 없었으며 매매계약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가 고소를 취하한 적은 없었으며 매매계약 당시 법무사에게 적법하게 위임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전 보도를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및 불기소 처분 사실 등을 인지했을 시기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45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정정보도 게재 및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보는 ○년 ○월 ○자 [ ] 제목의 기사에서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21억 원의 사채를 빌렸다가 3개월 만에 시가 90억 원이 넘는 신축건물을 강탈당했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① 차용금 15억 원에 대한 2개월의 이자가 3억 7,500만원이었다. ② 차용금의 이자와 더불어 신축 중인 오피스텔 4개 동을 넘겨주기로 했다. ③ 법무사 사무원 B씨에게 6억 원을 빌린 이자로 3개월간 9,000만원을 지급했다. ④ 21억 원을 빌렸다가 소유권이 넘어간 신축오피스텔의 시가는 90억 원을 넘는다. ⑤ 현재까지 매일 50만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되면서 그 금액만 7억 여원에 달한다. ⑥ A씨 등이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등기원인증서를 임의로 작성했다. ⑦ 법무사 사무원 B씨는 법무사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를 꾸몄다. ⑧ 사채업자의 압박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어쩔 수 없이 A씨가 요구하는 소유권말소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였다. ⑨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허위사문서 조작 등 오피스텔을 강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⑩ A씨가 잔금 ○원을 입금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차용금 총 21억 원에 대한 월 이자가 2.5%였음이 밝혀졌고, 같은 판결을 통해 차용금 외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이전해 주기로 한 사실, 법무사 사무원에게 9,000만 원을 빌린 이자로 3개월 간 3,779,457,27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신축 오피스텔의 시가는 ○원이었다는 사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차용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청산금을 건설업체에 지급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미지급 잔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건설업체가 소유권말소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도 없었으며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으나 혐의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가 고소를 취하한 적은 없었으며 매매계약 당시 법무사에게 적법하게 위임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보도문과 조정대상보도에 포함된 사진이 함께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보도문을 피신청인 사회면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피신청인 계정의 블로그 등 SNS에 전재된 조정대상보도가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 사례 40

## 2018서울조정1938·1939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을 승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잘못 보도하면서 과거 전과기록까지 언급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스포츠지를 발행하는 피신청인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스포츠경기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해당 사건의 공범으로서 해외 도피중이라면서, 과거의 전과기록과 함께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문제의 승부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과거 사실이 공개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해당 기사의 B씨는 승부조작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B씨가 용의자에게 돈을 건네준 뒤 C국으로 도피해 있었다는 기사내용, B씨가 다른 현역선수들에게 한국에서 승부조작을 하고 D국으로 넘어오라고 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져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오보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게재 및 해당 보도의 복제글의 열람·검색 차단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심리 이전에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 차단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신문은 지난 ○년 ○월 ○일자 [ ] 제목의 기사에서 ‘공범은 현재 D국에서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B씨’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기사의 B씨는 승부조작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B씨가 용의자에게 돈을 건네준 뒤 C국으로 도피해 있었다는 기사내용, B씨가 다른 현역 선수들에게 한국에서 승부조작을 하고 D국으로 넘어가라고 하였다는 기사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년 ○월 ○일 ○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에 따라 이행한 정정보도문을 전송한다.

**사례 41****2018강원조정16, 17(병합) 각 손해청구**

신청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보도했으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해당 지역 모 초등학교 입학식 추첨식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녀가 추첨기를 돌리는 모습을 촬영,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해당 사진을 각 게재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를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부는 단순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권고하였고, 피신청인이 5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사례 42

## 2018서울조정2276·2277 정정·손배청구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타 언론사 기사를 전재하였는데도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작성해 정정보도한 사례

## 보도내용

- 종합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링거 투약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상급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고, 사망사고에 대해 신청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 보도하였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유족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 뉴스통신사의 보도를 별도의 취재 없이 그대로 전재하면서 그런 사실을 밝히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건 당일 A씨가 이미 매우 심한 호흡곤란을 이유로 방문하였고,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차병원으로 긴급히 후송하였으며, 2차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의식이 있었다
- 시의회 의장이 언급한 내용은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장과 함께 삼오제 전에 유가족들을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하였을 뿐이다
- A씨의 사망은 질병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의 치료와는 무관하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신청취지대로 이미 정정보도를 게재하였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등 신청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손해배상금 200 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당사자 및 경찰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추가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신문은 지난 ○월 ○일 [ ] 제목의 기사에서 B의원에서 수액을 맞다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환자 A씨가 3차병원 후송 중 사망한 데 대해 원장이 사과도 없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유족의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는 유족과 경찰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원장에게 사실관계를 취재하여 작성한 것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원장은 “호흡곤란 증세로 4차례 의원을 방문한 바 있고 8월 9일에도 같은 증세로 의원을 찾은 A씨에게 기관지 확장제가 포함된 수액을 처방하였고, 약 50분간 수액을 투여한 뒤에도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차 병원으로 후송을 결정한 것이며, ○시 의장은 유족들에게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삼오제 전에 유가족들을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년 ○월 ○일 ○시부터 보도문을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보도문을 전송한다.



### 사례 43

#### 2018서울조정2335 손해청구

연예인 관련 보도에서 동명이인인 일반인의 SNS 계정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한 사례

####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인 피신청인은 모 배우가 자신의 SNS에 셀카 사진을 업로드했다고 보도하면서 사진과 함께 ‘보조개 미녀’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름이 같을 뿐 일반인인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을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실수임을 인정하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이미 차단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사례 44

## 2018서울조정2399 손배청구

발언 내용을 편집, 보도하면서 실제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중재부가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상파 방송사인 피신청인은 타 방송사의 부동산 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부동산 매물이 실제로는 광고비와 수수료를 받는 ‘광고’였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인 신청인이 의뢰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 방영하였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부적절한 방송 편집으로 신청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도되었고,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로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전혀 다른 사람의 발언내용을 같이 편집하여 신청인이 오해를 받는 등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권고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되자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70 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 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 건설회사 관계자 : ○○이 저희꺼 되게 많이 팔았어요. ○개월 전에 ○동에 있는거 40개 팔았어요.
- ▶ 리포터 : 그동안 방송한 매물들을 방송한 사람들이 직접 판매해 왔다고 합니다.
- ▶ 분양업체관계자 : 수수료는 1,200만원을 줘야할 거 같아요.
- ▶ 잠입취재원 : 하나 팔아주면... 데리고 와서 팔아주면 1,200만원. 하나를 팔아주면 1,200.. 어.. 근데 그걸 40채를 팔았다고 하니까 거의 5억.
- ▶ MC : 가까이 되는 금액을 벌었다는.. 수치상으로 얘기가 되는데...
- ▶ 리포터 : 그렇다면 건축주들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 사례 45

## 2018서울조정2340 손해청구

사건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와 사건 내용이 동의의 범위를 넘어 방영된 데 대해 손해배상과 함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상파방송사인 피신청인은 미제 사건을 다루는 방송 코너에서 사건 피해자 유족을 인터뷰한 후, 대역배우를 활용하여 사건 내용을 방영하였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충분한 동의 없이 인터뷰를 하고,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유감을 표명하며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사과문을 공지 사항으로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 방송은 ○년 ○월 ○일자 [ ] 코너에서 [ ]이라는 제목으로 살인사건 피해자 장모 분의 인터뷰 내용을 방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동의 없이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그 내용의 방영을 강행하여 해당 가족분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 ]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최상단 공지사항으로 아래의 글을 게재하여 7일 동안 노출하되, 그 이후에는 일반 게시글로 유지되어 검색되도록 한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 제 5 장

## 기사수정/ 열람·검색 차단 사례



## 제5장 기사수정/열람·검색 차단 사례

### 사례 46

#### 2018서울조정20 손해청구

IPTV를 상대로 조정신청하여 기사 열람·검색 차단 조치로 취한 사례

#### 보도내용

- 종합편성채널 A사는 특이한 사연을 가진 일반인 출연자들의 사연을 듣는 대담 프로그램에 신청인의 사연을 보도하였고, IPTV사인 피신청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송출하였다.

#### 신청취지

- 신청인은 본인의 초상을 완벽히 모자이크 처리해주기로 한 A사가 당초의 약속과 달리 얼굴 상부, 옆모습 등 신체의 일부를 모자이크 없이 수 차례 내보내 신원이 특정되어 피해를 입고 있고, 병력 및 가정사 등이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며, 해당 조정대상보도가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어 피해가 가중되었다며 A사 및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각 청구하였다.

#### 조정결과

- 심리 전 A사는 손해배상액 일부를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해당 보도물의 열람·검색 차단 조치를 취하여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사례 47

## 2018서울조정857 손해청구

조정대상보도에서 업체명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안전성검사에서 불합격한 중국산 전자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구매대행업체인 신청인 회사의 업체명을 함께 보도하였다.

## 신청취지

- 신청인은 동일 제품을 수입한 공식수입업체는 거론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체인 신청인 업체명만을 부각 보도하였고, ‘꼼수’, ‘밀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사진에 언급된 신청인 업체명을 수정 및 모자이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문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 구매처럼 속여서 들어오는 밀수를 어떻게 적발할지 고민해야 한다.” [중략]

당시 정부는 6개 품목에 한정됐던 ‘목록통관 대상’을 전 소비재로 확대하고, 미국은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기준에 따라 200달러, 기타 국가는 100달러 내에서 이들 품목을 구입할 경우 면세와 수입신고절차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략]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현재 인터파크, G9,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비롯해 A사, B사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지난달 전월보다 200% 이상 판매량이 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고객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의 제품을 배송하는 등 ‘개인 사용 목적’으로 둔갑해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제품을 들여오는 듯하다. 이는 법망을 교묘히 피한 ‘밀수’로 볼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현재 인터파크, G9,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비롯해 A사, B사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지난달 전월보다 200% 이상 판매량이 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현재 인터파크, G9,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비롯해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업체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11번가에 따르면, ○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지난달 전월보다 200% 이상 판매량이 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사례 48

## 2018서울조정987 정정청구

조정대상보도 중 문제가 된 단어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모 기업의 노조 집회에 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노동조합이 어용노조라는 해당 기업 직원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 신청취지

- 신청인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청인을 어용노조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 노동조합은 출범 후 수 차례 노사협의를 하였고, 최근 임금위임을 해결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측이 장악한 어용 노조’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직원의 인터뷰를 보도함으로써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조정대상보도에서 ‘어용노조’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 일부만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A기업 직원들이 27일 열릴 예정인 노조의 “경영 정상화 촉구” 집회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초 집회 일정에 합의했던 3개 노조 중 B노조는 “조합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개 노조는 지난 25일 “이번 총집회는 경영 정상화 촉구, 2017년 임금 위임 조속한 해결 등의 목적이다”라며 27일 낮 12시 A기업 본사 정문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중략]

하지만 3개 노조 중 B노조는 결국 집회 참여 계획을 철회했다. B노조는 25일 오후 11시께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27일 집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B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3개 노조가 함께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며 “우리는 (27일 집회가) 조합원의 민의가 아니라고 느껴 대의원대회를 열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집회 거부와 별개로 A기업 직원들의 노조에 대한 신뢰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제보방이 만들어진 초기부터 많은 직원들이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언론에서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제보방을 만든 A기업 직원은 25일 C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A기업 노조는 사측이 장악한 어용 노조”라며 “직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고 총수 일가의 갑질에 강력히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보방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제보방을 만든 A기업 직원은 25일 C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A기업 노조는 사측이 장악한 어용노조”라며 “직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고 총수 일가의 갑질에 강력히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보방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 밑줄친 부분 삭제



## 사례 49

## 2018총복조정36 정정청구

피신청인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나, 문맥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모 지자체 기초의원 후보가 폐기물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면서, '특정인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주민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 신청취지

- 해당 선거구 후보자인 신청인은 타 정당 후보자의 구속이 선거와 무관한 사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시의원에 출마한 타 후보의 구속은 '폐기물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아 검찰구속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는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조정대상보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오는 ○월 ○일 지방선거에서 A당 공천을 받고 기초의원 B선거구에 출마한 C후보가 폐기물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다가 공교롭게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지난 ○일 구속 수감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중략]

반면 이번 C후보의 구속 시점을 놓고 지역 유권자 및 주민들은 지난해 가을 농협 조합장에 출마했던 모 후보자가 구속된데 이어 이번 C후보의 기습 구속이 겹치면서 의혹제기와 함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C후보는 선거법이 아닌 다른 건으로 구속됐고 아직 후보 사퇴서는 접수된



것이 없다”며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자격을 상실하므로 현재로서는 옥중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략]

D면 주민 모 씨는 “지난 조합장 후보자의 구속 때도 의구심이 들었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난데없는 후보자의 구속은 주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구속이 이뤄진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은 물론 특정인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E당 F 시장과 기초의원예 출마한 E당 G 전 비서실장이 H면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D면 주민 모 씨는 “지난 조합장 후보자의 구속 때도 의구심이 들었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난데없는 후보자의 구속은 주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구속이 이뤄진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은 물론 특정인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E당 F 시장과 기초의원예 출마한 E당 G 전 비서실장이 H면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 조정대상보도 중 해당부분 삭제



## 사례 50

## 2018서울조정1096 정정청구

정당 대변인의 논평을 다룬 보도에 대해 발언이 왜곡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종합일간신문인 피신청인은 정당 대변인인 신청인이 기업 대미투자가 미국의 통상압박에 의한 것임을 간과한 채, 정부의 반기업정서 때문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하였다.

## 신청취지

- 신청인은 발언의 일부만 발췌보도하여 의미가 왜곡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신청인의 논평이 부적절하다고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기업의 발언을 함께 게재했으나 발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정한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 반론이 포함된 내용으로 기사 수정하기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업들에서조차 ‘아전인수’ 해석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어 “반시장·반기업적 환경을 견디지 못한 국내 기업들이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최근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모듈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고,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 공장에 3억80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엘지(LG)전자도 미국에 공장을 신설했거나 짓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기업들을 옥죄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펴며 법인세를 인상하고 기업을 범죄시까지 하면서 정작 ‘일자리를 만들라, 투자를 늘려라’고 뉘달하니 기업들이 떠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과는 달리 해당 기업들은 해외 투자의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를 꼽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화큐셀은 지난 5월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7일 미국통상대표부가 발효한 미국 내 수입되는 태양광 셀과 모듈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사업환경이 악화되었다”며 “미국 공장을 통해 세계 2위 태양광 시장이자 큐셀의 주력시장인 미국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세이프가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역시 미국의 세이프가드로 미국 현지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올해 초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또 현대차 역시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밝혀 같은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자유한국당의 논평에 불만을 표시했다. 복수의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자세한 사정도 모르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무리한 논평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대변인은 “오늘치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인용한 논평”이라며 “일간지 사설이라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 사설은 이들 기업의 투자에 대해 “(한화큐셀의) 결정이 세이프가드 등 미국 통상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대차 삼성 LG의 투자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압력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해외 투자를 단편적 요인으로만 해석할 일은 아니다”라며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성립 후 보도문**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업들에서조차 ‘아전인수’ 해석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중략]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과는 달리 해당 기업들은 해외 투자의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대변인은 “오늘치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인용한 논평”이라며 “일간지 사설이라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 사설은 이들 기업의 투자에 대해 “(한화큐셀의) 결정이 세이프가드 등 미국 통상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대차 삼성 LG의 투자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압력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해외 투자를 단편적 요인으로만 해석할 일은 아니다”라며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해당 기업들에서조차 논평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중략] 장제원 대변인의 논평과는 달리 일부 기업들은 해외 투자의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대변인은 “오늘치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인용한 논평”이라며 “일간지 사설이라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제원 대변인은 “‘한화 큐셀의 미국공장 신설이 단순히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조치라는 단편적 요인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과 노동 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사설에 근거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 사례 51

## 2018서울조정1581, 1582 각 정정청구

지자체의 옥외광고 사업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특수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이 연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곧 개통될 것이라는 잘못된 내용의 옥외광고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하였다.

## 신청취지

- 신청인은 이미 보도 이전에 광고물 교체 계획을 수립, 업체와의 계약까지 완료하였고, 보도 이후 광고물 교체를 완료하였다며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므로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홍보시설물 디자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7월말까지 해당 간판을 정비 완료하기로 업체와 계약했고, 7월 31일자로 교체 완료했다
- 보도 전에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교체가 오리무중이라고 보도되어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오리무중’이라고 표현한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을 ‘광고 교체는 7월말’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김포시 ‘2018 지하철시대?’ 옥외광고 방치

내년 하반기 개통, 광고 교체는 오리무중

김포도시철도 개통은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도시철도를 올해 개통한다는 옥외광고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개통 연기에다 시정홍보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포시는 오는 11월 예정이던 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갑자기 내년으로 미뤄 ‘깜깜이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중략]

김포시 관계자는 교체할 광고 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안이 제작되면 작업에 들어가 7월말까지는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부제목 수정

내년 하반기 개통, 광고 교체는 오리무중



내년 하반기 개통, 광고 교체는 7월말



## 사례 52

## 2018전북조정85 정정청구

공무원인 신청인의 원 발언 내용을 조정대상보도에 정확히 언급하여 기사를 수정한 사례

## 보도내용

- 뉴스통신사인 피신청인은 지자체의 승진인사가 지난 지방선거의 후유증일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지자체 인사팀장인 신청인이 직급승진에서 누락된 모 과장과 관련, '이번에 진급을 하지 못할 곤란한 이유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신청인은 발언의 내용을 발췌, 왜곡하여 실제 발언의 취지와 다르게 보도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보도내용은 통화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한 것으로 전체적인 취지는 이와 다르며, 신청인이 기사 내용에 동의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므로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조정대상보도의 해당 발언 내용을 실제 발언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C군의 사무관 승진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승진인사를 하면서 올해 ○월 직위승진한 과장을 이번 승진에서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중략]

실제로 원래 보직이 있었던 보건소 ○급 팀장은 이번 인사에서 보직에서 배제됐다. 그는 이번 군수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B씨 동생의 아내다. 정년까지 겨우 ○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보직 팀장이 무보직으로 좌천된 배경을 놓고 지역에서는 여러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A과장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일 것이란 관측이다. A과장은 민선○기 군수시절 ○계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올해 ○월 직위승진해 ○과장을 맡았었다. 민선○기 군수체제로 권력이 이동하면서 ○과장



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직급 승진에서는 누락됐다. [중략]

인사부서 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A과장이 이번에 진급을 하지 못할 ‘곤란한 이유’가 있다”며 “인사권은 군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A과장은 “군정전반을 고려해 인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례 53

## 2018서울조정1907 정정청구

사립유치원 관련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다룬 보도에 대해 기사열람·검색 차단으로 조정결정한 사례

## 보도내용

- 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사립개인유치원을 없애 버리고 싶거나 학부모 유권자들은 유치원장과 갑을 관계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온라인을 통해 보도하였다.

## 신청취지

- 신청인은 보도에 언급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일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제3자의 댓글을 신청인의 발언으로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보도에 언급된 각종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신청인이 이의신청하여 법원으로 자동 소제기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을 향한 ‘적개심’이 무섭게 느껴진다. 박 의원은 운영비 부정사용이 드러난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4000여 사립유치원 전체의 문제로 판단하고, 모든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을 ‘비리집단’ ‘적폐대상’으로 규정짓고 있다. 박 의원은 섬뜩하게도 사립개인유치원을 “씩 없애버리고 싶다” “그나마 사정을 봐줬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중략]

박 의원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학부모 표를 무기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집단 이익을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척결대상 정치집단’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 유권자들은 아이를 맡긴 부모로서 유치원장과 갑을 관계다”면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유권자들을 ‘유치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정치 행위를 하는



소신없는 유권자’로 매도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선출직인 교육감, 국회의원, 구청장들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두려워해 ‘유치원의 비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심지어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들이 (사립유치원과) 협의를 잘 해달라”는 등 국회 의원과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압박성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중략]

박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사립개인유치원을 “씩 없애버리고 싶다” “그나마 사정을 봐줬다”는 등 협박성 폐친 댓글까지 등장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설마 이런 말들을 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독자들을 위해 박 의원의 인터뷰 발언과 페이스북 댓글을 정리했다. [중략]

박 의원의 페이스북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사립개인유치원들을 싹 없애버리고, 공립유치원과 사립법인유치원들만 남겨뒀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당신들의 사정을 봐줘서, 어떤 회계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당신들을 공교육의 영역에 받아들인거거든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여전히 투자비용 투자비용 노래를 부르는데요”라는 댓글이 달려 있다.



## 사례 54

## 2018강원조정18·19 정정·손배청구

조정대상보도를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의해 수정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문구를 삽입한 사례

## 조정취지

- 뉴스통신사인 피신청인은 모 대학 국제어학원장이 특정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 강사를 탈락시키는 등의 특혜를 주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강사들을 자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하였다.

## 신청취지

- 신청인은 특정 강사에게 특혜를 주거나 강사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국제어학원 A씨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적이 없으며, 어학원 강사를 부당하게 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에서 조정대상보도의 일부 표현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 신청인의 반론을 덧붙여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시간강사 처우개선은커녕 자르려고 혈안... 채용 특혜 의혹까지

○대 국제어학원 시간강사들, 명분없는 재채용 방식에 “명백한 갑질” 반발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도내 한 국립대학에서는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시간강사 채용으로 기존 강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연수과정에서 일하는 강사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강사실 앞



게시판에 ‘겨울학기 한국어연수 강사 인력풀 공고문’이 붙었다.

이 공고는 강사들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강사가 부족하면 신규강사를 채용했던 이전과 달리 공고에는 ‘현재 강의 중인 모든 강사가 해당한다’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이다. [중략]

강사들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국제어학원의 특정한 채용과 특혜 문제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A원장이 부임 후 같은 학과 출신인 B씨에게 연수추천 등 특혜를 지속해서 줬을 뿐만 아니라 전담강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B씨의 지도교수를 면접관으로 참여시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격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기존 전담강사를 탈락시키고 B씨를 뽑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초 특별반 수업을 담당하며 3개월 근무한 강사를 명확한 사유 없이 해고했는데 여기에 B씨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여기에 B씨는 인력풀 공고문이 올라온 뒤 기존 강사들의 강의를 참관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강행해 갑질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강사들은 “원장이 바뀌면 평가와 재채용을 들먹이며 압박해온 적은 있었으나 기존 강사들을 대상으로 서류 제출, 면접, 시범강의 등 신규 채용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재채용한 적은 없었다”며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장은 ‘원장실로 찾아오라’는 위압적인 답변만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어학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A원장 등과 닿지 않았다.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시간강사 처우개선은커녕 자르려고 혈안... 채용 특혜 의혹까지(제목)
  - A대 국제어학원 시간강사들, “명분 없는 재채용 방식”에 반발
- 강사들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국제어학원장인 A씨의 특정한 채용과 특혜 문제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 강사들은 이 같은 일들이 일나는 배경에는 국제어학원의 특정한 채용과 특혜 문제가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 명확한 사유 없이 해고했는데
  - 명확한 사유 없이 재계약하지 않았는데
- 여기에 B씨는 인력풀 공고문이 올라온 뒤 기존 강사들의 강의를 참관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강행해 갑질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 여기에 B씨는 인력풀 공고문이 올라온 뒤 기존 강사들의 강의를 참관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강행해 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 강사들은 “원장이 바뀌면 평가와 재채용을 들먹이며 압박해온 적은 있었으나 기존 강사들을 대상으로 서류 제출, 면접, 시범강의 등 신규 채용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재채용한 적은 없었다”며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원장은 ‘원장실로 찾아오라’는 위압적인 답변만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는 어학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A원장 등과 닿지 않았다’
  - 이에 대해 어학원 측은 강사채용과 연수 추천 과정은 관련 규정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부당해고와 특정인에 대한 특혜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년 ○월 ○일 수정된 것입니다〉

# 제 6 장

## 기타 사례



## 제6장 기타 사례

### 사례 55

2018서울조정261·262, 263·264(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모 관광지의 안전조치를 비판한 보도에 대해 조정신청 취지를 PR보도 형식으로 반영한 사례

#### 보도내용

- 종합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각종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보도하면서, 유명 관광지인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및 승선신고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 운항한다고 지면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해당 관광지를 관리, 운영하는 법인인 신청인은 섬을 왕복하는 여객선은 관련법에 의해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구명동의에 대한 안내 방송과 구명동의 착용법에 관한 동영상 상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이 짧기 때문에 법규상 승선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섬을 왕복하는 여객선은 소형 유선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구명동의에 대한 안내 방송과 구명동의 착용법에 관한 동영상 상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이 짧기 때문에 법규상 승선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일부 사실 확인을 위해 2차 심리로 속행되었고,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 수정하였다. 또한 심리 이전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신청인 관련 PR보도가 게재되어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후 보도문

경기도 ○군과 맞닿은 A섬(사진). ○강 상류 강 안에 있는 A섬이 벚꽃과 공연이 어우러진 봄나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A섬은 요즘 벚꽃이 만발했다. 섬 중앙 잣나무 길에서 동쪽으로 걷다 보면, 강변을 따라 일렬로 늘어선 400m 구간 수양벚나무 군락지가 펼쳐진다. 일반적인 벚나무(왕벚나무)와 다르게 아래로 죽 늘어뜨린 가지 사이로 새하얀 벚꽃이 흐드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중략]

A섬은 ‘안전 관광’에 앞장서고 있다. ○ 선착장~A섬 900m 구간 ○강을 운항하는 선박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승무원이 선박 크기별로 3~5명씩 동승한다. A섬 전 직원 100여 명은 ○소방서 ○119센터와 연계해 정기적으로 ‘응급환자 대응 및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A섬 대표는 “선박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장비가 갖춰져 있고 모든 직원이 화재 초기 진화 및 응급환자 응급처치 요령, 사고 대처요령 등을 익혀 안전한 관광 실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 사례 56

## 2018대전조정11·12 정정·손배청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역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폐기물 처리시설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위조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으며, 폐기물매립장 사업 승인은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참석자 명단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 명단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정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입장을 충분한 분량으로 보도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인터뷰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1

A시민단체는 15일 검찰청에 시장과 시행사 대표 및 전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했다.

A시민단체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년 ○월 ○일 B면사무소에서 시 ○과가 개최하고 D시행사가 주관해 열렸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A시민단체 모 위원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포함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에 나와 있는 47명 중 16명은 면담 인터뷰, 5명은 통화 인터뷰를 진행해 확인과정을 거쳤다”며 “서명자 총 21명 중 13명이 본인이 한 서명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서명자중 2명은 설명회에 참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중략]

이번 사문서 위조 고발 주체인 A시민단체가 시와 시행사의 대응을 예의주시 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시와 시행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조정대상보도2

A시민단체는 21일 시청 광장 로터리에 설치되어 있는 농성 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인허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A시민단체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의혹 풍년인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승인한 행위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에 다름아니다”라며 시, 도, 행정청을 강하게 비난하고 “여러모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도 승인이 이루어진 행위는 폐기물처리업체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행위지만, 시민들에게는 환경재앙을 떠넘기는 행위”라며 이 감사 청구의 목적이 ‘공익’에 있음을 밝혔다.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 ■ 인터뷰\_A업체 대표이사 B

최대현안 문제로 떠오른 환경문제. 특히 C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산폐장) 설치를 둘러싸고 행정과 시민, 그리고 사업자 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이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A업체 B 대표이사를 만나 사업자 측의 입장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1문 1답을 통해 들어 보았다. - 편집자 주 [중략]



Q. A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하여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산폐장은 앞서 사업추진경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인허가 과정의 적법성과 행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관련법령 등 입법취지를 사전에 숙지하여 어떠한 법령위반도 없이 절차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Q. 사업진행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진행되어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에 대해?

이와 관련하여, 한 시민단체에서 사업시행사가 주민설명회 명부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였다고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방명록 등을 위조하고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더구나 사업시행 관련 주민설명회 방명록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과정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니어서 위조할 이유가 없다. 현재, 위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정이 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 후에,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면 발전기금 협약식을 ○년 ○월 ○일자로 체결하였다. 아마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기 위해서 ○면 발전기금 협약식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는데, 앞 뒤 순서를 오해하여 하시는 말씀인 듯하다. [후략]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표이사를 인터뷰하여 피신청인 발행의 주간신문 ○면에 기사로 게재하되,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해당 기사에 포함되도록 하고 ○년 ○월 ○일 이전까지 이행하기로 한다.
  - 인터뷰는 피신청인 편집국장이 진행함
  - 대표이사의 사진을 게재함
  - 산폐장 설치의 필요성, 산폐장 인허가 과정의 정당성, 조정대상보도에 대한 신청인 회사의 반론
- 위 인터뷰기사의 제목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의 본문이 별도의 창으로 열리도록 한다.

**사례 57****2018서울조정763 손배청구**

신청인의 SNS 내용, 아이디, 닉네임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한 보도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연예전문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유명가수 팬사인회를 응모했는데 실수로 다른 가수의 팬사인회 응모함에 잘못 넣어 당첨되었다’는 신청인의 트위터 내용을 언급하면서 해당 가수를 무시해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다른 가수의 팬사인회에 당첨된 것은 팬사인회 응모를 진행한 업체의 실수가 주된 원인이었고, 동의 없이 자신의 트위터를 캡처, 보도하여 트위터 내용과 아이디, 닉네임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보도후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받고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다며 손해배상 대신 사과보도를 게재하겠다고 밝혔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후 보도문****보도내용**

피신청인이 ○년 ○월 ○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 [ ] 내용에 대해 피신청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를 게재한 이후 신청인(트위터 아이디 : ○)이 입은 피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 사과문을 ○년 ○월 ○일 ○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에 따라 이행한 사과문을 전송한다.

**사례 58****2018전북조정57·58, 59·60(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재개발조합 내 사문서위조 등 고발사건을 보도하여 중재부의 사실조회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을 바탕으로 후속보도를 게재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모 재개발조합의 사무국장인 신청인이 본인을 조합원으로 등재하기 위해 모 조합원의 토지를 매수한 후 조합장의 인감을 도용하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시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고발되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조합의 인감 등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고, 사전에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서류에 날인하고 원본을 지자체에 제출하는 등 절차상 위조할 수 없다
- 관련법에 따라 땅을 매도한 주민과 공유하여 입주권 1개를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입주권을 받아 조합에 해를 끼친 것처럼 보도되어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중재부는 신청인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및 절차의 하자 여부를 지자체에 사실조회하였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문서 위조 등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후속보도 게재를 권유했고, 심리 이후 후속보도가 게재되어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조합 사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A지역 재개발 사업에서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러 개인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신뢰와 공정성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 A지역 재개발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조합 B 사무국장은 조합원 순번 ○번에 등재된 C씨로부터 ○년 ○월 ○일 ○동 ○-○, ○-○번지를 매수한 후 ○일 이전등기를 마친 뒤 조합원 순번에 본인을 등재시켰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는 1명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C씨만 조합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B씨는 ‘조합원변경인가신청서’에 조합장의 인감을 도용하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시에 제출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해 조합과 시 행정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번분할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의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혐의로 19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중략]

조합원 모씨는 “사무장 B씨는 조합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전 조합장인 D씨 모르게 조합의 직인을 날인한 조합 명의의 조합원변경인가신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이를 통해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조합원과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돼 재산상의 상당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개발조합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청렴과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B씨의 범죄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정보유출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도 있어 사무장이 조합에 10여년 몸담으면서 조합장 2명이 바뀌는 동안 사무장만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조합 내에서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조합 사무장 B씨는 “C씨의 토지 4평을 매입해 조합원 명부에 올라간 건 맞지만 공유자로 등재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권을 받거나 선거인명부에 올라간 사실이 없는데다 어떠한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 조정신청 후 보도문

A지역 재개발사업에 이 조합 사무국장인 B모씨가 분양자격이 없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라 지난 ○월 ○일 [ ]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라 “A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국장인 B 모 씨가 조합장 모르게 조합의 직인을 날인한 조합원변경인가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취득,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B 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정비법’상 정비사업시행 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정당하게 조합원의 자격 및 공유자로서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에 확인 결과 B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B 씨는 권리산정일 이후에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땅을 매도한 C씨와 공유로 1개의 입주권(분양권)만을 갖게 되며 개별적 입주권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또, B씨는 조합장 직인 도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합장 직인은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서류에 날인을 하고 원본을 시에 제출하기 때문에 위조돼 제출될 수 없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인감 도용과 허위 서류제출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충분히 해명했다.



**사례 59**

**2018서울조정1599 손해청구**

기상보도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 향후 포털사이트, SNS, 카페 등에 신청인의 사진이 전파될 경우 열람·검색 차단에 협조하기로 한 사례

**보도내용**

- 뉴스통신사인 피신청인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닥쳐 ‘양산 남성족’이 등장했다며 폭염에 양산을 쓴 신청인의 사진을 4차례에 걸쳐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 없이 초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이후 신청인의 사진을 이미 내렸거나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였다며 신청인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고, 포털사이트나 SNS, 카페 등에 전파될 경우 사진의 열람·검색 차단에 협조하기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사례 60

## 2018경기조정127·128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아들의 병역기피 관련 의혹제기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기자 개인 블로그, SNS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역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지자체 의원인 신청인의 아들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이 13세에 타국 국적을 취득하여 즉시 자국 국적이 상실되었고, 이중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으며, 병역의무시기와는 관계가 없다며 정정보도와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A 의원의 아들은 ○년 ○월 ○일 ○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거주하다가 만 13세 무렵인 ○년 ○월 ○일 자진하여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그 때부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뿐, 타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기자 개인 블로그와 SNS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본보는 ○년 ○월 ○일 ○면 [ ] 제목의 기사에서 A 의원의 아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하다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병역판정검사연기를 한 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년



○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 의원의 아들은 B국에서 출생한 후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하다가 만 13세인 ○년 ○월 ○일 B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뿐, 이중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면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하고, <A언론>과 <B협회> 등에 전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 및 노출을 차단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사례 61

## 2018충북조정45, 46(병합) 각 정정청구

학교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후속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학교재단이 운영하는 중학교가 교장 선임방식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총동문회 등이 이사장의 독단적인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학교 관계 단체의 성명서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초빙교장을 외부에서 내정하여 임용하려 하였으나 학교 관련 단체의 반대를 수용하여 이사회는 교장공모제로 임용방법을 변경하는 안을 의결하였음
- 후원금, 기부금 모금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위기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장의 여러 대외활동을 강조하는 도중 예시로 한 발언이며, 외부의 지원, 후원을 받아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은 교장의 중요한 활동임
- 기부, 후원금은 학생의 장학금, 교육활동지원, 교육시설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절대 이사장의 사적 유용은 없을 것임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후속보도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A중학교가 교장 선임문제로 재단과 이해단체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교관련 이해단체가 이사장의 독단적인 학교 재단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이 공모제 교장을 선임하려는 시도는 문제점이 많다”며 “투명한 공모를 통해 능력 있고 활동적인 인사를 초빙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사장은 교장이 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고 외부 활동을 통해 기업체로 부터 후원, 학교 기부금을 모금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발언을 했다”며 “전교 학생 수가 130명 되는 학교에서 무슨 기업체 후원금이 필요하고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쓸려고 하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략]

이들 단체는 “A중학교는 재단에서 설립했지만 50년 동안 배출한 동문들 그리고 재학생들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은 교장을 선임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로 학교 발전을 저해 하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고, 만일이라도 독단적 행동으로 모든 일을 강행한다면 동문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학부모회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속보=학교법인 B학원 A중학교는 ○일 “교장 및 학교 관련 단체는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하자는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A중은 이날 “C군의 명문사학으로 이사장은 절대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월 ○일 이사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교장공모제로 임용방법을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장공모제에 대해 1대1 간담회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재단이 이미 교육 구성원과 상호 소통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해 독단적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A중은 “후원금과 기부금 모금은 학부모회원, 학교운영위원들과 이사장이 토론 과정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당장의 위기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장의 여러 대외활동을 강조하는 도중 예시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의 유능한 총장이 후원금 및 기부금을 받아 학생들의 장학금 및 복지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교장들도 대외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장은 “기부, 후원금은 모두 A중 학생들의 장학금 및 교육활동지원, 교육시설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보도방법

- ○년 ○월 ○일까지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주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년 ○월 ○일까지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상시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해 검색되도록 한다.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사례 62

2018서울조정1698, 1699(병합) 각 정정청구

성폭력 관련 보도에 대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NS 등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 1은 공기업 산하기관 직원인 신청인이 용역 업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포털사이트) 피신청인 2는 해당 보도를 매개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치마속 촬영 시도 등의 행위는 있었으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나체 사진을 수시로 보낸다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의 사실은 없었는데도 피해사실이 과장 보도됨으로써 부정적인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나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이 밝혀져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 1,2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및 피신청인 1 계정의 SNS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차단 조치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신청인들이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 사례 63

## 2018경남조정48·49 정정·손배청구

폐간된 언론사의 전통 계승과 관련, 신청인 언론사 대표의 기고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언론사가 옛 A신문의 전통을 계승하겠다고 표명했으나 이는 역사 왜곡이라는 취지의 옛 A신문 출신 기자들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이미 이 건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문을 게시했고, 피신청인 언론사와 통화하여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신청인 언론사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안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A신문 출신 언론인 일동은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B신문이 A신문의 3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 것에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A신문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B신문이 창간 1주년 기념식 관련 기사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A신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창간했다’고 표현한 점과 B신문 제호 아래 ‘30년 전통을 이어가는 지역신문’이라는 문구를 넣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B신문이 A신문을 계승하고 있다는 표현 등에 “어이없고 황당하다 못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결론적으로 말해 B신문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역사왜곡이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B신문의 구성원은 ○년 시민주 공모로 창간한 A신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그들은 그 흔한 1만 원 짜리 주식 한 장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들이 ‘A신문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론직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신문 지면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단체장과 유력 정치인들 얼굴 알리기에 치중하는 듯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B신문의 일반 기사들이 대체로 베껴쓰기나 받아쓰기로 일관한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특히 “B신문의 고 A신문 대표 관련 기사는 타 언론사에 실린 인터뷰와 A신문에서 일했던 기자의 칼럼을 그대로 가져와 짜깁기해서 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아무런 사과와 설명 없이 베껴 쓴 부분을 지우고 고쳤다”고 설명했다.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 ■ <기고문> 현 B신문 논란에 대한 답변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기고문입니다.

B신문은 지난해 6월 ○도로부터 제호를 합법적인 절차로 등록, 지면과 인터넷 신문을 함께 하고 있는 언론사로서 지난 8월 창간 1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지역 언론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지난 8월 27일 A신문 출신인으로부터 B신문의 ‘30년 전통’이라는 시사를 사용하지 마라는 항의와 함께 A신문 주식 유무를 언급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오해와 사건은 시작됐다.

이날 통화에서 B신문은 “C시의 전통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폐간된 대표 신문인 A신문의 전통을 알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 목적으로 ‘30년 전통’이란 사시를 사용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뜻을 충분히 전했다.

하지만 이미 색안경을 끼고 B신문을 바라본 A신문 출신인 중 1명은 개인 페이스북에 ‘30년 전통’에 대한 글과 B신문의 기사를 함께 기재, 이 게시물에 대한 누리꾼들의 댓글을 유도했다. B신문은 사실에 맞지도 않은 일부 악성 댓글에 시달려야만 했다.

B신문은 악플로 인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당일 입장문을 기재하고, 홈페이지의 사시를 수정



했다. [중략]

만약 B신문이 ‘30년 전통을 이어 가겠다’ 는 표현을 상업적, 영업적, 의도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B신문의 지난 ○월 진행된 창간 1주년 행사가 창간 31주년으로 행사가 진행됐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B신문은 경남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오해의 소지와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고, 이후 개인적 감정에 치우치는 매개체가 아닌 지역 언론사로서, 또 언론 선후배로서, 지역인으로서 상부상조하고자 한다. B신문은 지역신문의 자리를 넘어 ‘약간 더 나은 신문’이 아니라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전혀 다른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면 신문에 광고를 대신해 생활주변 소식과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 건이라도 더 전하고 변함없이 시민 곁에서 진솔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지역 언론으로 정론 직필의 자세를 견지해 갈 것이다.

####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지난 ○월 ○일자 홈페이지에 실린 B신문 관련 기사와 관련해 신청인 측의 반박, 해명 등을 담은 기고문을 ○년 ○월 ○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분량은 1500자 이내로 하고 제목, 게재 위치 등은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검토에 이의없이 따르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기고문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기고문(제목과 본문 포함)을 삽입하도록 한다.



## 사례 64

## 2018서울조정1881 정정청구

반론보도와 함께 조정대상 프로그램의 유튜브 채널에도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 지상파방송사인 피신청인은 모 협회장 여동생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 회사가 해당 협회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취지로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하였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협회장 여동생이 소유한 지분과 협회 공사로 얻은 수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협회장의 여동생은 해당 회사의 지분을 ○% 가지고 있을 뿐이고, 신청인 업체는 전체 인테리어 공사 금액 중 원청업체로부터 1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재하청받은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

###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신청인 측 반론을 신는 방안을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고, 방송 및 온라인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에 대해서도 반론을 게재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 앵커 : A회장이 선택한 첫 번째 사업은 다른 아닌 ○회관의 리모델링 공사였다고 합니다.  
[중략]
- ▶ 앵커 : 협회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한 곳이 다른 아닌 A회장과 관련된 회사라는 것. 이는 과연 사실일까?> 작년 초부터 ○산업개발은 총수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특수관계로 지목된 것은 한 인테리어업체. A회장의 여동생 B씨가 주주로 있는 업체였습



니다. 취재진은 해당 인테리어업체에 인테리어 홈페이지를 검색해봤습니다. B씨의 오빠 A회장의 ○산업개발 사옥과 A씨의 아버지를 기리는 ○재단의 인테리어공사에 참여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문으로 떠돌던 의혹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A회장 취임 직후 진행된 ○협회 리모델링 공사 역시 이곳에서 참여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업체가 진행한 모델하우스 상당부분도 ○산업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진 대부분이 오빠인 A회장, 그리고 ○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당업체의 기업신용분석보고서를 입수해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2014년 기준 해당업체의 지분 ○%를 보유한 B씨. 경영실권자가 본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다른 보고서 역시 A회장의 여동생인 B씨를 경영실권자로 꼽습니다. 거래 99.9%를 ○산업개발과 했다는 내용도 눈에 띄입니다. [중략]

- ▶ 앵커 : ○협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2013년 해당업체의 재무 상태는 어땠을까? 그런데 전년도와 매출액이 비슷한 2013년 이례적으로 약 54억원의 현금수익을 올린 것이 눈에 띄입니다. 전년에 비해 약 25배 늘었다는 겁니다. [중략]
- ▶ 앵커 : 인테리어업체가 큰돈을 번 2013년은 주주 B씨의 오빠가 회장으로 있던 ○협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던 해입니다. 그저 우연인 걸까요? [후략]

## 조정성립 후 보도문

### 보도내용

지난 ○월 ○일 [ ]에서는 ‘○협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2013년 ○협회장인 A회장의 여동생 B씨가 ○%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협회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고, 2013년 한 해 동안 54억원의 현금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으나, 당시 B씨의 해당 회사 지분율은 ○%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협회 인테리어 전체 공사금액 11억 9만원 중 1억 6천만원의 재하청을 받았을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고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 [ ] 프로그램의 [ ]면의 초기화면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 ] 프로그램 다시보기면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 유튜브에 게시된 [ ] 프로그램의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면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사례 65

## 2018서울조정2230~2232, 2236, 2294, 2298 각 손배청구

자발적으로 공개 SNS 계정에 게시한 사진을 인용한 보도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초상을 보도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

##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인 피신청인은 SNS에서 여성들이 짧은 헤어스타일을 공개하면서 해시태그를 붙이는 ‘탈코르셋’ 열풍이 불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을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시태그 운동의 의미가 퇴색하고 대중에게 조롱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조정결과

- 중재부는 신청인들이 탈 코르셋 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히며 자발적으로 다수에게 공개된 SNS에 게시한 사진을 인용한 보도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초상을 보도한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신청인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이수역 폭행사건 이후 자신의 짧은 헤어스타일을 공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새 200명 가까운 여성들이 짧은 머리카락을 인증하며 이른바 ‘탈코르셋’ 행렬에 나선 상태다.

○일 ○시 ○분 현재 SNS 인스타그램에서는 ‘#내가\_탈코르다’라는 해시태그로 총 190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해당 SNS 이용자들은 전날 이수역 폭행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떠오른 뒤 틀에 박힌 여성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시선을 탈피하고자 해시태그를 전파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수역 폭행사건이 단초가 된 이 운동은 사건의 진실공방과 별개로 페미니즘 진영의 ‘숏컷’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새다. 관련해 참여자들은 “머리가 짧아도 나는 여성” “더이상 눈요깃거리로 살지 않는다”라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수역 폭행사건은 지난 13일 새벽 서울 지하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발생했다.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시비를 벌이다 싸워 여성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다툼이 남녀 간 혐오 감정으로 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